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13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Market Entry Regulation)

2011.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13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Market Entry Regulation)

임 준/나성현/강유리/최아름

2011.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 구 기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임 준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나성현 연구위원

강유리 전문연구원

최아름 연 구 원

목 차

요약문 ····· ix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국내 무선통신시장 현황 및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 3

제 1 절 무선통신시장 현황 ····· 3

1. 무선통신시장 현황 ····· 3

2. 이동통신시장 현황 ····· 11

3. 신규 사업자의 진입 ····· 26

제 2 절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 30

1.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 30

2.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 41

제 3 장 주요국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 47

제 1 절 미 국 ····· 47

1. 서비스 분류 및 진입 규제 ····· 47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 50

제 2 절 영 국 ····· 54

1. 서비스 분류 및 진입규제 ····· 54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 57

제 3 절 일 본 ····· 59

1. 개요 ····· 59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 64

제 4 절 호 주 ····· 66

1. 전기통신서비스의 분류 ····· 66

2. 사업허가제도 ····· 68
3. 주파수 할당 ····· 69

제 4 장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및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방향 ····· 71
제 1 절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방향 ····· 71
1. 기본방향 ····· 71
2. 제도 개선 방향 ····· 73
제 2 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의 검토 ····· 75
1.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 75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선방안 ····· 79

제 5 장 결 론 ····· 83

참고문헌 ····· 86

표 목 차

〈표 2－1〉 무선통신서비스 현황(2011년 8월 말 기준) ····· 4
〈표 2－2〉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 5
〈표 2－3〉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액 ····· 6
〈표 2－4〉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 수 ····· 8
〈표 2－5〉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 9
〈표 2－6〉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 9
〈표 2－7〉 위성휴대/데이터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 10
〈표 2－8〉 휴대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 10
〈표 2－9〉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 비중 ····· 17
〈표 2－10〉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무선 재판매 포함) ····· 19
〈표 2－11〉 이동전화 사업자별 소매 매출액 현황(무선 재판매 포함) ····· 20
〈표 2－1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 27
〈표 2－13〉 국내 재판매사업자(별정 2호 ,4호) 현황(서비스 미제공사업자 제외) ····· 29
〈표 2－14〉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 32
〈표 2－15〉 기간통신사업의 변경 허가 ····· 34
〈표 2－16〉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 35
〈표 2－17〉 주파수 할당 ····· 39
〈표 2－18〉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 40
〈표 2－19〉 기간통신사업의 제공을 위한 주파수 할당의 유형 ····· 41
〈표 2－20〉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항목 및 배점 ····· 43
〈표 2－21〉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WiBro, 2010년 12월) ····· 44
〈표 3－1〉 미국의 전기통신서비스 분류 ····· 47
〈표 3－2〉 미국의 주파수 할당 방식 연혁 ····· 53
〈표 3－3〉 영국의 무선국 허가 유형 ····· 58

〈표 3-4〉 총무성령에 따른 역무구분 내용 ····· 60
〈표 3-5〉 규제 정책의 목적상 역무구분 ····· 61
〈표 3-6〉 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 68
〈표 4-1〉 현행 허가심사기준의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76
〈표 4-2〉 계량지표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현행) ····· 78
〈표 4-3〉 신용등급별 배점(현행) ····· 78
〈표 4-4〉 계량지표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예시) ····· 81
〈표 5-1〉 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 85

그 림 목 차

〔그림 2-1〕 무선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비중(2010년) ····· 7
〔그림 2-2〕 휴대인터넷 매출액 추이 ····· 11
〔그림 2-3〕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매년 말 기준) ····· 14
〔그림 2-4〕 이동전화 보급률 ····· 14
〔그림 2-5〕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 추이 ····· 15
〔그림 2-6〕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 16
〔그림 2-7〕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및 비중 ····· 16
〔그림 2-8〕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 ····· 18
〔그림 2-9〕 이동전화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추이(무선 재판매 포함) ····· 20
〔그림 2-10〕 이동전화 소매 매출액 기준 점유율(무선 재판매 포함) ····· 21
〔그림 2-11〕 이동전화 사업자별 ARPU 추이(무선 재판매 포함) ····· 22
〔그림 2-12〕 이동전화 1위 사업자 점유율 추이 ····· 23
〔그림 2-13〕 이동전화 1위, 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 추이 ····· 23
〔그림 2-14〕 이동전화 HHI 지수 추이(무선재판매 포함) ····· 24
〔그림 2-15〕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의 변천 ····· 31
〔그림 3-1〕 일본의 주파수 할당 절차 ····· 66

요 약 문

1. 제 목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에 따라 무선통신사업의 진입규제는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 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전파법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고 규정(제10조)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된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 행정절차의 적용 등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제도의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2장은 국내 무선통신시장과 진입규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술한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을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장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전기통신서비스 분류 및 진입규제 제도 그리고 주파수 할당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은 현행 허가

제도와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향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제5장은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국내 무선통신시장 현황

기간통신서비스 중 무선통신서비스란 전파를 전송매체로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이동통신,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tio Service), 무선데이터통신, 위성휴대/데이터통신(GMPCS: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휴대인터넷(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국내 무선통신서비스 시장 규모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2006년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4,068만 명이었으나, 2010년 말 기준으로는 5,169만 명으로 약 27% 증가하였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77만 명으로 이동통신 보급률은 전체인구대비 100%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본 무선통신서비스 시장도 2006년 이후 매년 5~6%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별 성장률을 보면 이동통신서비스는 매년 5~6%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서비스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 무선호출 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매출액은 2006년 매출액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파수공용통신의 경우 2007년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의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무선데이터통신은 2008년과 2009년에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위성휴대/데이터 통신 서비스 매출액은 2007년에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1990년대 후반 CDMA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개인휴대통신(PCS)이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995년 말에는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64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9년 말에는 2,344만 명으로 약 14배로 증가하여, 4년간 평균 가입자 증가율 94.4%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입자 증가율이 감소하긴 했지

만,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말에 2,682만 명이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2년에 3,000만 명을 넘겼다. 이후 2006년에는 가입자 수 4,000만 명을 넘겼고, 2010년에는 가입자 수 5,000만 명을 넘겼다. 2011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 2010년 말 대비 2.4% 증가한 수준인 5,196만 명을 기록하였다. W-CDMA가 본격화된 2007년에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으로 가입자 수가 8.7%로 증가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동통신시장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9조 4,009억 원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7% ~ 9%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5%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2002년 이후 SK텔레콤, KT, LGU+의 3사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010년 말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50.6%, 매출액 기준으로 54.4%이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어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은 특정 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다. KT의 2010년 말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31.6%, 매출액 기준으로 30.5%이고, LGU+는 가입자 수 기준으로 17.8%, 매출액 기준으로 15.1%이다.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은 시장점유율 비율, HHI 등으로 측정한 시장집중도 측면에서는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위 사업자의 강한 지배력이 존재하여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제도적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진입 장벽, 규제 산업에 따른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시장 구조 변화가 활발하지 않다.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한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장집중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통신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 서비스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규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망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미 통신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SK텔레콤, KT,

LGU+와 같이 하나의 새로운 독립적인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법이다.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제한으로 인한 진입장벽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22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신규 네트워크 사업자의 진입과 관련해서는 2010년 하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와이브로 사업자 허가심사가 진행되었으나, 각각의 심사에서 허가신청법인들이 허가에 적합한 최소점수를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사업자 진입이 무산된바 있다.

□ 주요국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미국은 전기통신서비스를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와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구분하며 사업자는 Common Carrier와 그 외의 Non-Common Carrier로 분류한다. 주내(intrastate)통신서비스는 각 주 공공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ission)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각 주별로 규제체계가 상이하다. PUC는 허가 심사를 위해 제출된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바탕으로 해당사업자의 ① 재정적 능력(Financially qualified), ② 기술적 능력(Technically qualified), ③ 서비스 품질 및 범위(Quality of service requirement), ④ 공공이익 부합성(Public interest)을 평가하여 사업자를 허가한다. 국제전화를 제외한 주간통신(interstate) 서비스는 허가가 불필요하다. 그러나 Common Carrier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소유지분 이전에 따른 자산변동으로 나타난 회선의 이전은 FCC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통신서비스를 국제권역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FCC의 개별면허 승인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FC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 부여된 조건과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도 만료된다. 미국의 주파수 관리는 연방용은 상무성 소속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민간용은 FCC가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전파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통신법내의 무선관련 규정(Title Ⅲ)과 연방규정집 47 C.F.R., 기타 관련 FCC 규칙을 통해 주파수를 관리한다. 47 U.S.C. § 301에 따라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FC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 부여된 조건과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도 만료된다. 주파수 이용에 대한 허가는 FCC로부터 별도 취득하며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뤄지

고 있다.

영국은 일반인가 지침(The Authorization Directive)에 따라 기존 각국 규제기관에게 귀속된 재량권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999년 EU의 새로운 규제체계에서의 허가(Authorization Directive)는 관련된 통신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모든 공중 전기 통신·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포괄하며, 기존의 면허지침보다 개별허가의 조건과 의무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인가지침의 핵심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가 통합(harmonized)된 시장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개별면허(Individual Licenses)를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면허가 일반인가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는 허가와 같은 규제기구의 결정이나 행정 조치가 없이 통지(Notification)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게 되며, 다만 이 때 예외적으로 주파수대역과 번호 할당의 경우 특별 조건의 적용이 존속된다. 영국에서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를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무선 전신법에 따라 Ofcom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Ofcom이 발행하는 면허는 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같이 규격화된 기기 형태의 사전포괄면허(Pre-packaged licence), 무선국이 이용하는 주파수 지정 형태의 주문형면허(Customized licence),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주파수면허(Spectrum Licences)의 3가지 형태로 나뉜다.

일본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설비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로써 통신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진입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진입이 간소화되었다. 총무 대신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결격 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며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의 명, 업무구역, 전기통신개요 설비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명을 변경하거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자 중에서 공익사업 특권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에의 진입에 관한 수속(등록 또는 신고)과는 별도로 그 전기 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총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 진입규제 완화로 주파수 할당절차 및 무선국 개설허가가 사실상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한다. 무선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 총무대신의 면허를 필요로 한다. 1997년 10월부터 특정 무선국의 면허의 특례(포괄 면허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정 무선국의

면허의 신청시에는 특정 무선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규사업자가 개설하는 전기 통신사업용의 무선국이 전파 감리상 중요하고도 이례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파 감리 심의회에의 자문을 거쳐 예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선국 면허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주파수 할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된다. 미국, 영국, 호주가 경매제에 기반해 주파수 할당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비교심사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09년 7월에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매제 도입을 검토 중임을 밝힌바 있어 향후 경매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호주는 통신사업자를 설비보유여부에 따라 전송서비스 사업자(Carrier)와 서비스제공 사업자(SP; Service Provider)로 구분된다. 전송서비스 사업자는 망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로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로부터 개별적으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설비 운영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SP는 허가 취득이 필요하지 않으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무선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파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에 의해 사업자면허와 더불어 무선통신면허(Radiocommunications License)가 필요한데, 무선통신면허는 다시 주파수면허(Spectrum License), 설비면허(Apparatus License), 종별면허(Class License)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송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파수 면허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송서비스 사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신청서와 허가비용을 선납하여 개별적으로 허가를 신청(Individually Licensed)하여야 한다. 주파수면허는 특정 기술,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포함한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한다. 설비면허는 특정 기기의 운용을 전제한 면허로, 19개로 분류된 기기형식에 따라 구분되고 허가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별면허는 허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특정한 무선설비에 대해 개방적, 집단적으로 사용면허를 발부하는 것으로 ACMA가 정한 일반적인 수준의 허가요건만을 준수하면 된다.

□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는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현 제도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비대칭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기간통신 역무통합에 따라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규모 등에 상관없이 주파수 할당만으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반해, 신규사업자는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하며, 이 경우 법개정 의도와 크게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극단적인 예로, 자본금 1000억원의 신규사업자 A와 자본금 10억원의 기존사업자 B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 이에 대해 경매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A는 허가심사를 통해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B는 무선통신서비스의 제공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다.

둘째, 단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추진하는 경우 현 제도는 사업허가와 심사를 통한 주파수 할당의 중복적인 적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실무에 있어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심사를 병행, 즉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제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의 심사기준의 차이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는 통과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심사에는 떨어지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심사를 통한 사업허가와 원칙적으로 가격경쟁방식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갖는 자원배분 메카니즘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 복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추진하는 경우 이들 중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허가와 경매라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되게 될 것이나, 이들에 대해 허가심사를 먼저 적용하게 되는 경우 재정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허가심사에 탈락, 경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거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에 반하는 결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방향

현재의 이원화된 진입규제는 주파수 할당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무선통신사업자의 진입에 있어서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주파수 자원의 획득에 있으며, 주파수 할당 그 자체가 허가권의 부여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이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통한 것이든 경매를 통한 것이든 주파수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해

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별도의 사업허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주파수 자원의 획득 그 자체가 사업허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 통신법 체계의 진화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무선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주파수 할당으로 돌리는 대안은 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등록으로 전환하는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미 충분히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대한 진입규제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허가제도는 실질적으로 무선통신서비스에 적용될 때 그 유의미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 기능을 주파수 할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 폐지라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진입규제 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파법에 따른 경매제의 운용에 있어 사전심사 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허가제도가 그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현행 허가심사기준의 검토

본 연구는 부분적으로 현행 허가심사기준의 계량평가 지표 및 비중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최근 통신 시장의 진입이 비교적 자유로워짐에 따라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의 출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심사기준을 변화된 통신시장에 계속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재정적 능력의 평가 방법,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의 일관성, 계량평가 지표의 적합성 여부, 계량평가 비중의 적정성 여부, 계량평가의 최저점(60점) 부여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현재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허가의제 제도 도입과 전파법에 따른 경매제 적용시 사전자격 요건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이는 무선통신사업의 제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주파수 할당임에 따라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주파수 차원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의 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수행된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기준의 개선방향은 향후 고시개정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진입규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보다 합리적이고 일원화된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제도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통신시장의 경쟁촉진과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UMMARY

1. A Research on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Market Entry Regulation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Currently, a new entrant in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market is required to acquire both license for the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operator and radio frequency assignment license. This "dual" regulation is needed to reform to promote competition and enhance regulatory transparency.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this research, we study the following topics. First, we study the market environments of wireless telecommunications and show the necessities of reformation of wireless market entry regulation. Second, we study entry regulation regim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United Kingdom, Japan, and Australia. Third, we conclude this research some suggestions to reform wireless market entry regulation.

4. Research Results

Current dual regulation causes problems such as asymmetric regulation between incumbent and new entrants, degrades regulatory transparency, and increasing regulatory costs of entrants and regulator. To overcome above problems and promote competitions

and increase regulatory transparency, it is recommended that introducing an unified entry regulation regime in which radio frequency assignment decides the new entrant.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n this study, we recommend that build an entry regulation system in which radio frequency assignment system leads entry regulation as a general rule. We also suggest a simple approach in which radio frequency assignment is automatically considered a business license, that is, a new entrant which acquires a radio frequency is valid as a facilities-based telecommunications operator without separate business license. These suggestions can be formalized by revising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Radio Wave Act.

6. Expectations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to build a competitive and transparent market environments by introducing a unified regulator regime.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Wireless Market Environment and Needs for Reformation of Entry Regulation

Chapter 3. Cross Country Study on Entry Regulation

Chapter 4. A Suggestion on Wireless Market Entry Regulation and Telecommunications Licensing Regime

Chapter 5. Conclusion

제1장 서 론

지난 수년전부터 주요국 통신시장에서 유선시장의 정체 및 무선시장의 성장이라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11월 iPhone의 국내 출시와 함께, 국내 통신시장은 스마트폰-무선인터넷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구도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고도화, 경쟁촉진 등 통신정책의 핵심적인 화두들이 무선시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유선통신사업과는 달리 주파수 자원의 제약이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니며, 각국은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의 추세와는 별개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위해 무선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진입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는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과거,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제도의 병합 운용으로 해당 주파수 자원에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허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발하고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구조였으나, 기간통신 역무통합 및 전파법의 주파수 할당 제도 정비를 통해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는 추가적인 사업허가 없이 주파수를 할당받는 것만으로 무선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도의 존속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경우 무선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된 무선사업 진입규제는 규제 중복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두 제도의 적용 방식이 서로 다름에 따라 행정절차 적용의 선후 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사업허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beauty contest)의 방식을 따름에 비해, 주파수 할당은 원칙적으로 경매라는 가격 경쟁 방식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개의 신규사업자가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와 주파수 경매라는 두 가지 행정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허가를 먼저 적용하는 경우 허가심사

를 통해 단 하나만의 신규사업자가 사업허가권을 획득하는 경우 주파수 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 사업허가라는 행정절차의 先적용을 통해 경매에 의한 주파수 할당을 적용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사업계획서 심사에 의한 사업허가, 그리고 원칙적으로 가격 경쟁방식에 의한 주파수 할당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는 그 제도의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은 국내 무선통신시장과 진입규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술한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을 보다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장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전기통신서비스 분류 및 진입규제 제도 그리고 주파수 할당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은 현행 허가제도와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향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 기준의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제2장 국내 무선통신시장 현황 및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제1절 무선통신시장 현황

1. 무선통신시장 현황

가. 개요

기간통신서비스 중 무선통신서비스란 전파를 전송매체로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로서, 이동통신,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TRS: Trunked Ratio Service), 무선데이터통신, 위성휴대/데이터통신(GMPCS: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휴대인터넷(Wibro: Wireless Broadband Internet) 서비스 등의 형태로 제공된다.[1)]

2011년 8월말을 기준으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표 2-1〉과 같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는 SK텔레콤, KT, LGU+가 있다. 리얼텔레콤은 전국을 대상으로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이동통신은 수도권 지역에, 아이즈비젼은 부산·

---

1)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의 활용을 통해 이동 중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중에서 셀룰러 또는 PCS 서비스는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고, IMT2000 서비스는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한다. '무선호출 서비스'는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가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이며,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는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이다.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는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를, '위성휴대/데이터통신 서비스'는 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경남 지역에, 센티스는 대전·충남에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파수공용통신 사업자는 전국 사업자로는 KT파워텔이, 지역 사업자로는 티온텔레콤(수도권, 대전·충남북), 케이비텔레콤(부산·경남), 대성글로벌네트워크(대구·경북), 파워텔티알에스(강원), 제주TRS(제주) 등 5개 사업자가 있다. 무선데이터통신 사업자로는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이 있으며, 위성휴대/데이터 통신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코리아오브콤, AP시스템, KT,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을 포함하여 4개 사업자가 있다. 휴대인터넷 사업자로는 KT와 SK텔레콤이 있다.

〈표 2－1〉 무선통신서비스 현황(2011년 8월 말 기준)

서비스		사업 구역	사업자수	사업자
이동통신	셀룰라	전국	1	SK텔레콤
	PCS	전국	2	LGU+, KT
	IMT-2000	전국	2	SK텔레콤, KT
무선호출		전국	1	리얼텔레콤
		지역	3	서울이동통신(수도권) 아이즈비젼(부산·경남) 센티스(대전·충남)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	1	KT파워텔
		지역	5	티온텔레콤(수도권, 대전·충남북) 케이비텔레콤(부산·경남) 대성글로벌네트웍(대구·경북) 파워텔티알에스(강원) 제주TRS(제주)
무선데이터통신		전국	3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위성휴대/데이터통신 (GM-PCS)		전국	4	코리아오브콤 AP시스템 KT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
휴대인터넷(Wibro)		전국	2	KT SK텔레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무선통신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가입자 수 기준으로 2006년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4,068만 명이었으나, 2010년 말 기준으로는 5,169만 명으로 약 27% 증가하였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077만 명으로 이동통신 보급률은 전체인구대비 100%이다. 무선호출 서비스와 무선데이터 가입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각각 2만 명, 6만 2천명의 가입자가 있다. 주파수공용통신 및 위성휴대/데이터통신 서비스는 위성통신 시장의 수요 증가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였다. 휴대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6년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애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명)

서비스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이동통신	40,197,115	43,497,541 (8.2%)	45,606,984 (4.8%)	47,944,222 (5.1%)	50,767,241 (5.9%)
무선호출	41,615	39,328 (－5.5%)	41,082 (4.5%)	21,066 (－48.7%)	19,917 (－5.5%)
주파수공용통신	321,125	332,747 (3.6%)	353,267 (6.2%)	352,092 (－0.3%)	377,540 (7.2%)
무선데이터통신	111,433	100,354 (－9.9%)	90,984 (－9.3%)	62,334 (－31.5%)	61,933 (－0.6%)
위성휴대/데이터 통신서비스	4,279	4,412 (3.1%)	3,897 (－11.7%)	3,857 (－1.0%)	5,193 (34.6%)
휴대인터넷	1,397	104,261 (7363.2%)	167,951 (61.1%)	316,880 (88.7%)	454,994 (43.6%)
합계	40,676,964	44,078,643 (8.4%)	46,264,165 (5.0%)	48,700,451 (5.3%)	51,686,818 (6.1%)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와이프로 가입자 수는 KT, SKT 사업자 제출 자료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매출액 기준으로 본 무선통신서비스 시장도 2006년 이후 매년 5~6%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서비스별 성장률을 보면 〈표 2－3〉과 같이 이동통신서비스는 매년 5~6%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서비스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크다. 무선호출 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매출액은 2006년 매출액의 1/3 수

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파수공용통신의 경우 2007년 이후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의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무선데이터통신은 2008년과 2009년에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2010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위성휴대/데이터 통신 서비스 매출액은 2007년에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3〉 무선통신서비스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서비스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이동통신	15,992,087	16,945,990 (6.0%)	18,032,494 (6.4%)	19,145,558 (6.2%)	20,145,050 (5.2%)
무선호출	3,378	2,914 (－13.7%)	4,097 (40.6%)	1,415 (－65.5%)	917 (－35.2%)
주파수공용통신	85,254	96,953 (13.7%)	102,201 (5.4%)	109,268 (6.9%)	115,153 (5.4%)
무선데이터통신	16,137	13,346 (－17.3%)	17,256 (29.3%)	23,943 (38.8%)	23,418 (－2.2%)
위성휴대/데이터통신서비스	135,023	117,515 (－13.0%)	121,656 (3.5%)	123,750 (1.7%)	133,661 (8.0%)
휴대인터넷	47	4,357 (9170.2%)	20,557 (371.8%)	129,324 (529.1%)	160,778 (24.3%)
기타	53,839	39,769 (－26.1%)	30,721 (－22.8%)	23,736 (－22.7%)	20,016 (－15.7%)
합계	16,285,765	17,220,844 (5.7%)	18,328,982 (6.4%)	19,556,994 (6.7%)	20,598,993 (5.3%)

주: 1) 기타 서비스는 무선랜, 무선고정통신서비스(B-WILL)를 포함
2)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 중 무선망 접속료는 구분하여 유선통신서비스로 분류
3) 2010년 이후 자료는 잠정치
4)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의 2010년 총 매출액은 20조 5,990억 원이다. 이 중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매출액은 20조 1,450억 원으로 전체 무선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9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서비스 다음으로는 휴대인터넷 시장이 매출액 1,608억 원으로 시장점유율 0.8%를 기록하였으며, 그 뒤로 위성휴대/데이터 통신 서비스(매출액 1,337억 원), 주파수공용통신(매출액 1,152억 원)이 각각 시장점유율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무

선호출, 무선데이터 통신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의 0.1%도 되지 않는다.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동통신시장에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동통신시장 외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해서 서비스 별로 살펴본다.

〔그림 2－1〕 무선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비중(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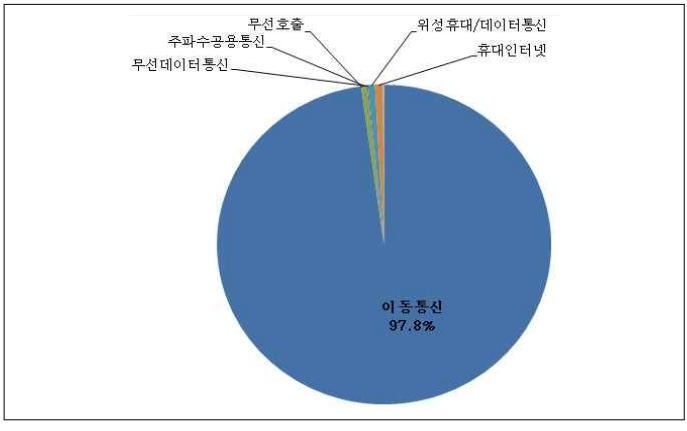

나. 무선호출

무선호출 서비스는 무선호출 수신기를 이용하여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서비스이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무선호출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1997년에 1천519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하면서 무선호출 서비스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음성 통화가 가능한 이동통신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무선호출 서비스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나래앤컴퍼니, 전북이동통신, 제주이동통신, 새한텔레콤, 코리아썬컴, 강원, 세정21, 해피, 세림 등도 무선호출 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무선호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2000년대 초반에 모두 사업을 폐지하였다.[2] 2011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무선호출 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는 전국사업자로는 리얼텔레콤이 있고, 지역 사업자로는 서울이

2) 사업폐지일: 나래앤컴퍼니(2000년 7월 20일), 전북이동통신(2000년 8월 1일), 제주이동통신(2000년 9월 6일), 새한텔레콤(2000년 12월 23일), 코리아썬컴(2001년 4월 3일), 강원(2001년 6월 7일), 세정21(2001년 6월 7일), 해피(2001년 7월 28일), 세림(2003년 2월 12일).

동통신, 아이즈비전, 센티즈 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서울이동통신 뿐이다. 현재 서울이동통신은 수도권에서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약 1만 8천여 명이다.

〈표 2－4〉 무선호출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명)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06
리얼텔레콤(전국)	35,537	28,449	25,206	－	－	－
서울이동통신(수도권)	6,078	10,879	15,876	21,066	19,917	18,496
합 계	41,615	39,328	41,082	21,066	19,917	18,49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다. 주파수공용통신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는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이다. 일정한 주파수를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이동전화 등 셀룰러시스템과 달리 독립된 각각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 다수의 이용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동전화의 주파수 사용방식이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주파수공용통신 허가 사업자는 KT파워텔, 티온텔레콤, 파워텔TRS, 대성글로벌네트웍, 케이비텔레콤, 제주TRS의 6개 사업자가 있으나,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KT파워텔, 티온텔레콤, 파워텔TRS 3개사뿐이다. 대성글로벌네트웍[3]은 2011년 상반기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2011년 6월 30일부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함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6년 이후 꾸준히 30만 명 이상을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이다. 전국에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T파워텔은 201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36만 4천여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여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 96%를 기록하고 있다. 티온텔레콤은 수도권 및 대전·충남북 지역의 9,833명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파워텔TRS는 강원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대구TRS는 2003년 3월에 YEN으로 개명하였고, YEN은 2006년 3월 13일에 대성글로벌네트워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표 2－5〉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명)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06
KT파워텔	303,433	317,113	337,257	337,267	362,332	364,383
티온텔레콤	9,291	9,183	9,588	9,593	9,921	9,833
파워텔TRS	8,389	6,439	6,410	5,220	5,275	5,076
대성글로벌네트웍	12	12	12	12	12	－
합 계	321,125	332,747	353,267	352,092	377,540	379,29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라. 무선데이터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는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1년 8월 말을 기준으로 무선데이터통신 허가 사업자는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한세텔레콤 3개 사업자이며, 모두 전국 사업자이다. 리얼텔레콤은 2009년 10월 30일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폐지하였고, 한세텔레콤은 2011년 6월 30일 부로 주파수 미할당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6년 11만 여명에서 2011년 6월 말에는 6만여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무선데이터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에어미디어는 가입자 수 5만 6천여 명으로 시장점유율 93%를 기록하고 있다.

〈표 2－6〉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명)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06
에어미디어	76,295	61,585	60,285	58,385	57,935	56,330
한세텔레콤	－	1,583	2,688	3,949	3,998	3,998
리얼텔레콤	35,138	37,186	28,011	－	－	－
합 계	111,433	100,354	90,984	62,334	61,933	60,32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마. 위성휴대/데이터통신

위성휴대/데이터통신(GM-PCS)은 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을 띄워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2011년 8월말 기준으로 코리아오브콤, AP시스템, KT,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이 사업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글로벌스타아시아퍼시픽과 코리아오브컴만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2－7〉 위성휴대/데이터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명)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06
글로벌스타 아시아퍼시픽	3,847	3,595	2,993	2,622	2,474	2,412
코리아오브컴	432	817	904	1,235	2,719	4,248
합 계	4,279	4,412	3,897	3,857	5,193	6,66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바. 휴대인터넷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2.4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여 이동 중에도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고,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와이브로(Wibro)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유선 초고속인터넷 및 무선랜의 이동성을 보완하고, 이동전화 무선인터넷의 데이터 용량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2002년 10월 무선가입자용(N-WLL)로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을 휴대인터넷용 주파수로 재분배하였다. 2005년 1월에는 와이브로 사업자로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을 선정했으나, 하나로텔레콤은 2005년 4월, 와이브로 사업의 진출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KT와 SK텔레콤에게만 사업권 부여 및 주파수를 할당하였으며, 2006년 6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2011년 6월 말 기준으로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53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 KT 가입자는 46만 명으로, KT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8〉 휴대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단위: 명)

구분	2006.12	2007.12	2008.12	2009.12	2010.12	2011.06
KT	950	103,266	156,900	285,040	365,393	463,001
SKT	447	995	11,051	31,840	89,601	68,157
합 계	1,397	104,261	167,951	316,880	454,994	531,15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그림 2－2〕 휴대인터넷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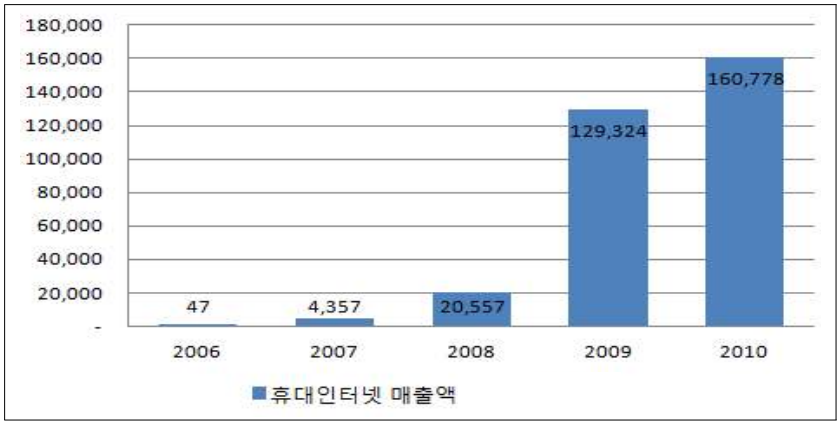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2. 이동통신시장 현황

가. 이동통신시장의 연혁

1) 이동통신 기술

이동통신(Mobile communication)이란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이동 중에 공간을 전송매체로 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전화 시스템은 어떠한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보낼 수 있느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다.

1세대(1G: 1st Generation) 기술은 아날로그 셀룰러 시스템인 AMPS(Advanced Mobile Phone Systems)을 말한다. 아날로그 이동통신시스템은 이동체의 전화와 무선 기지국 간의 음성을 전송할 때에는 아날로그 주파수 변조(FM: Frequency Modulation) 방식을, 신호를 전송할 때에는 주파수편이변조(FSK: Frequency Shift Keying) 방식을 사용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아날로그 기술은 이동전화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2세대 이동통신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2세대 이동통신은 디지털 이동전화 시스템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를 이용하는 통신 방식이다. CDMA 통신 방식은 우리나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술이기도 하다. CDMA 방식은 음성/데이터의 혼합 통신이 가능하며,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밀집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속도에 한계가 있었다.

2세대 이동통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로 1997년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표준이 선정되었다. IMT-2000은 3세대 이동통신 표준이라고 불리며, W-CDMA(Wideband-CDMA), CDMA 2000 1X, EV-DO Rev.A(Evolution-Data Optimized Revision A) 등의 방식으로 나뉜다. SK텔레콤은 2000년 10월 세계 최초로 CDMA 2000 1x 기술을 이용하여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상용화함에 따라 데이터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속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이후 2007년에는 SK텔레콤과 KTF가 유럽식 2세대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WCDMA-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3G 사업권이 없는 LG텔레콤은 기존 2G 주파수 대역에서 CDMA-Rev.A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했다.[4)]

2010년대에 들어서는 3세대 이동통신을 벗어나 새로운 이동통신 규격인 4세대 통신을 도입하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은 무선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4세대 이동통신은 하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성망, 무선랜, 인터넷 등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All-IP 기반의 서비스로, 기술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방식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중심으로 데이터 전송 속도를 증가시키는 기술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에서 표준화되고 있는 LTE(Long Term Evolution) 계열의 기술이다. 두 번째 방식은 고정형 무선 광대역 서비스에서 이동성을 보강하는 기술로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에서 표준화되고 있는 WiMAX(Wibro + CDMA) 계열의 기술이다. 국내에서는 2011년 9월과 10월에 SK텔레콤과 LGU+가 각각 LTE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편 SK텔레콤과 KT는 WiMAX 계열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 이동통신 사업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이다. 정부는 이동통신 수요의 증가와 통신기술 발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1984년 3월 29일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의 자회사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전담하는 한국이동통신을 설립하였다. 한국이동통신은 1984년 5월 1세대 기술이라 불리는 차량무선전화서비스 AMPS

4) EV-DO Rev.A와 HSDPA의 기술방식은 데이터 전속 속도와 해외 로밍 여부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다.

를 수도권 지역에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서비스 제공이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어 1991년 말에는 전국망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1993년 말에는 전국 74개 시 전역과 읍 및 인접 고속도로 주변지역에서도 이동전화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한국이동통신은 1994년 이전까지 이동통신시장의 유일한 사업자였으나, 1994년에 신세기통신이 제2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동통신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독점 체제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한국이동통신도 선경그룹(현 SK그룹)에 인수되어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바꾸고 민영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복점 체제로 접어들었다. 한국이동통신은 기존의 1G 아날로그 셀룰러 AMPS와 2G 디지털 CDMA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했고, 신세기통신은 디지털 CDMA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두 사업자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시작하였다.

1996년에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전면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구조 개편을 단행하면서 이동전화와 대체 관계에 있는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7년 10월부터 KTF(한국통신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3개 사가 PCS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나 5개 사의 경쟁구도는 과다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동통신시장은 구조 조정에 들어갔다.

1999년 12월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을 인수하고, 2000년 KTF가 한솔PCS를 인수함에 따라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이동전화 계열의 SK텔레콤, PCS 계열의 KTF와 LG텔레콤의 3개 사로 재편되었다. 이후 2009년 6월 1일에 KT가 KTF를 합병하고, 2010년 1월 1일에는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이 합병하여 7월 1일부터 LGU+를 탄생시킴에 따라 유·무선 통합 사업자의 3사 경쟁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나. 시장 규모 추이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1990년대 후반 CDMA 휴대전화가 보급되고, 개인휴대통신(PCS)이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995년 말에는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64만 명에 불과했으나, 1999년 말에는 2,344만 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여, 4년간 평균 가입자 증가율 94.4%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입자 증가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말에 2,682만 명이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2년에 3,000만 명을

넘겼다. 이후 2006년에는 가입자 수 4,000만 명을 넘겼고, 2010년에는 가입자 수 5,000만 명을 넘겼다. 2011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 2010년 말 대비 2.4% 증가한 수준인 5,196만 명을 기록하였다. W-CDMA가 본격화된 2007년에 치열한 가입자 확보 경쟁으로 가입자 수가 8.7%로 증가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5년 이후 연평균 약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3〕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매년 말 기준)

(단위: 천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그림 2－4〕 이동전화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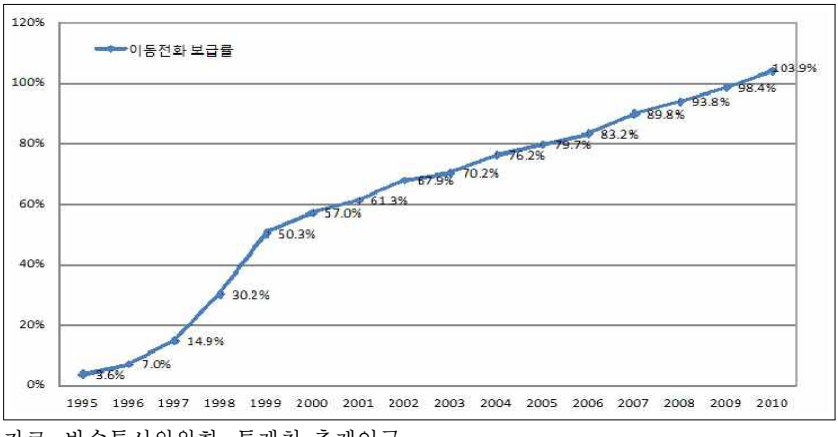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추계인구

이동전화 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이동전화 보급률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한 이동전화 보급률은 1995년에는 3.6%에 불과했으나, 1999년에는 50%를 넘겼다. 2010년에는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가 인구 대비 보급률 103.9%를 기록하면서 가입자 포화 상태에 달했다.

이동통신시장 가입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이동통신시장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9조 4,009억 원이다.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에는 7%~9%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5%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매출액 성장률이 더욱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5〕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 추이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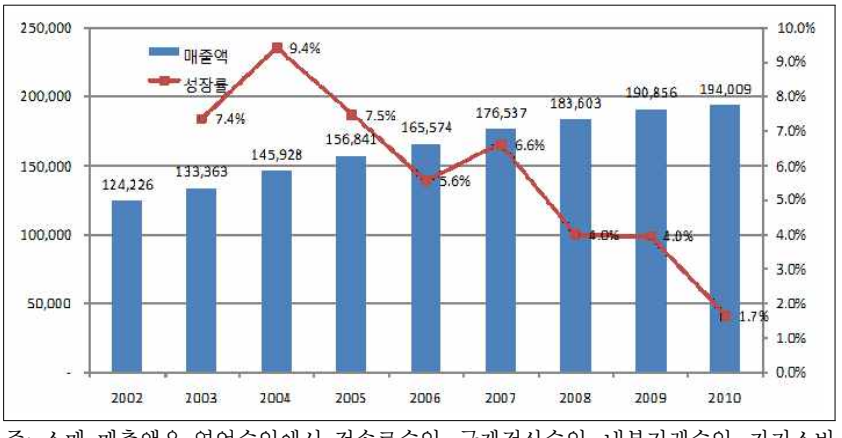

주: 소매 매출액은 영업수익에서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 사업용 수익 등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다. 스마트폰의 도입 및 확산

2009년 11월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 스마트폰 이용이 급속하게 활성화되었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2009년 말에는 80만 명에 불과했으나, 2010년 말에는 722만 명으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2011년 9월말에는 1,883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 대비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비중은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36%를 넘어섰다. 2011년 10월 28일

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는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체인구의 약 40%, 경제활동 인구의 약 8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2-6〕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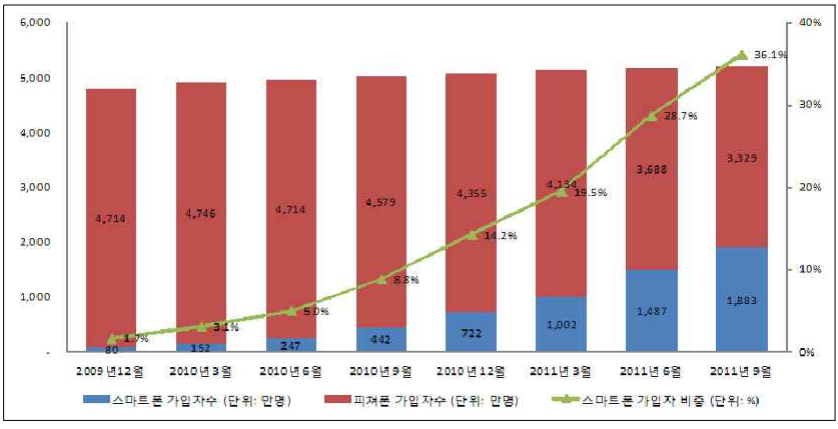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컨텐츠이야기

국내 이동 단말기 시장에서 스마트폰의 판매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분기에는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의 비중은 17.2%

〔그림 2-7〕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 및 비중

자료: Gartner(2011)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11년 2분기에는 전체 휴대폰 판매량 중에서 78.2%가 스마트폰이다. 판매 대수로 보면 2011년 2분기에 525만 대의 스마트폰이 판매된 것이다. 2010년 6월에 갤럭시S 출시되고, 2010년 9월과 2011년 3월에 KT와 SK텔레콤에서 각각 iPhone4가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판매량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1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 S2도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스마트폰 도입 이후 이동통신서비스가 기존의 음성 중심 서비스에서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정액 요금제에 가입하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말과 2009년 말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정액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한 비율이 각각 10.9%, 12.3%에 불과했으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인 2010년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중 24%가 정액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였다.

〈표 2－9〉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데이터 정액 요금제 가입자 비중

(단위: 천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이동전화 가입자	38,342	40,197	43,498	45,607	47,943	50,767
정액 데이터 가입자	3,127	3,468	4,100	5,008	5,910	12,165
가입자 비중	8.2%	8.6%	9.4%	10.9%	12.3%	24.0%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스마트폰 가입자 수 증가 및 정액 데이터 가입자 수 증가에 맞추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10년 1월에서 2011년 1월 사이에 약 11배나 증가하였다. 2009년 8월에 314TB에 불과하던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아이폰 도입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0년 1월에는 449TB를 기록하였고, 1년 후인 2011년 1월에는 5,463TB로 증가하였다. 모바일 트래픽 중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전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중 91%에 해당하는 4,985TB가 스마트폰에서 발생하였다. 2011년 3월을 기준으로는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20%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트래픽은 모바일 전체 트래픽의 95%를 차지하였다.

〔그림 2-8〕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증가 추이

자료: CNB 뉴스(2011. 8. 16)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증은 음성통화 서비스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망 과부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바일 트래픽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주범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지목됨에 따라 무제한 요금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고 있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LGU+는 신규 LTE 요금제를 발표하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하고 단계별 정액제를 도입하였다. 무제한 데이터 폐지와 같은 일차적인 해결 방법 외에도 Wi-Fi와 펨토셀과 같은 대체재 투자, 3G 기지국 증설, LTE 조기 도입 등 망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1) 시장점유율

이동통신 시장은 2002년 이후 SK텔레콤, KT, LGU+의 3사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010년 말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50.6%, 매출액 기준으로 54.4%이다.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어 SK텔레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5]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은 특정 시장에서 한 사업자의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쟁이 미흡한 상황이다. KT의 2010년 말 시장점유율은 가입자 수 기준으로 31.6%, 매출

5)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액 기준으로 30.5%이고, LGU+는 가입자 수 기준으로 17.8%, 매출액 기준으로 15.1%이다.

□ 가입자 수 기준

2010년 말 기준으로 SK텔레콤, KT, LGU+의 가입자 수는 각각 2,571만 명, 1,604만 명, 902만 명으로 3사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10년도 가입자 수 연간 성장률은 SK텔레콤이 5.9%, KT가 6.8%, LGU+가 4.2%로, 평균 5.9%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통 3사의 연평균 성장률인 5.8%와 유사한 수준이다.[6] 2011년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2010년 말과 비교했을 때 SK텔레콤은 2.7%, KT는 1.8%, LGU+는 2.4% 증가하여 각각 2,640만 명, 1,634만 명, 922만 명이다.

〈표 2－10〉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무선 재판매 포함)

(단위: 천 명)

사업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8
SKT	17,220	18,313	18,783	19,530	20,271	21,968	23,032	24,270	25,705	26,404
KT	10,333	10,442	11,729	12,302	12,914	13,721	14,365	15,016	16,041	16,336
LGU+	4,790	4,837	6,074	6,510	7,012	7,809	8,210	8,658	9,022	9,223
합 계	32,343	33,592	36,586	38,342	40,197	43,498	45,607	47,944	50,767	51,963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이동전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본 2010년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이 50.6%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KT가 31.6%, LGU+가 17.8%이다. 이동전화 시장 가입자 수 기준 시장 점유율은 2004년에 번호이동성 제도[7]가 도입되면서 사업자 간 점유율 분포에 다소 변화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에는 SK텔레콤:KT:LGU+가 약 5:3:2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1년 8월 기준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이 50.8%, KT가 31.4%, LGU+가 17.7%로 2010년 말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2002년부터 2010년까지 SK텔레콤은 연평균 5.1%, KT는 연평균 5.7%, LGU+는 연평균 8.2%로 성장하였다.

7) 번호이동성 제도는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변경해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이동전화의 경우 2004년부터 적용되었다. SK텔레콤에 먼저 적용된 후 6개월 간격으로 KTF, LG텔레콤의 순서로 시차를 두고 적용되었다.

〔그림 2－9〕 이동전화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추이(무선 재판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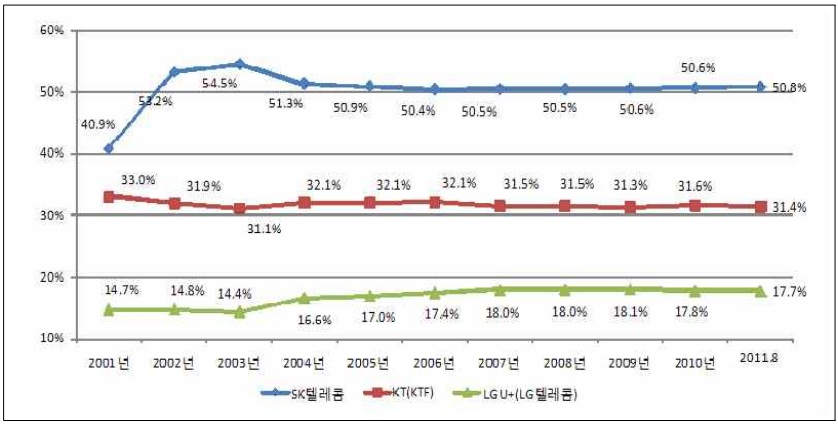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매출액 기준

2010년 말 기준으로 SK텔레콤, KT, LGU+의 매출액[8]은 각각 10조 5,870억 원, 5조 9,279억 원, 2조 9,443억 원이다. 이는 전년 매출액 대비 각각 0.1%, 5.5%, 1.6% 증가한 수치이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이통 3사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각각 4.4%, 6.4%, 10.3%임을 감안할 때, 최근 매출액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표 2－11〉 이동전화 사업자별 소매 매출액 현황(무선 재판매 포함)

(단위: 억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SKT	74,848	83,776	87,075	91,330	94,496	100,086	102,763	105,714	105,870
KT	35,984	35,869	40,656	44,061	46,708	49,573	52,873	56,165	59,279
LGU+	13,394	13,718	18,197	21,450	24,370	26,878	27,967	28,977	29,443
합 계	124,226	133,363	145,928	156,841	165,574	176,537	183,602	190,856	194,592

주: 소매 매출액은 영업수익에서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 수익 등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8) 소매 매출액은 각 사업자 영업보고서의 서비스 기준 매출액(단말기 매출,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제외)임.

이동전화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 2010년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이 54.4%로 가장 높으며, 그 뒤로 KT가 30.5%, LGU+가 15.1%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소폭 하락 추세에 있고, KT와 LGU+의 시장점유율을 소폭 상승 추세에 있지만, 이동전화 소매 매출액 기준 점유율 역시 가입자 수 기준 시장 점유율과 마찬가지로 사업자간 점유율 분포에 큰 변화는 없다. 2004년 이후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SK텔레콤:KT:LGU+가 약 5.5:3:1.5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림 2－10〕 이동전화 소매 매출액 기준 점유율(무선 재판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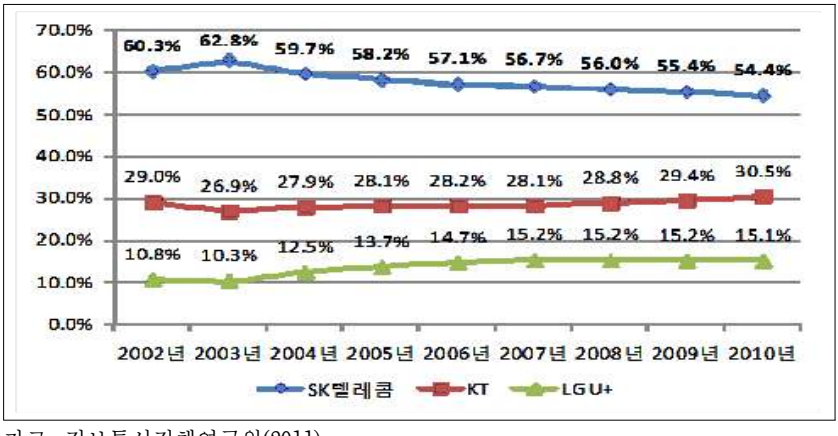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과 비교했을 때, SK텔레콤은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높고, LGU+는 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더 낮다. 이는 상대적으로 SK텔레콤 이용자들의 가입자당 수익(ARPU: Average Revenue Per Unit)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기준으로 이동전화 사업자별 ARPU를 보면 SK텔레콤은 41,187원, KT는 36,955원, LGU+는 32,635원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지출 성향이 높은 가입자를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ARPU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과 ARPU의 비례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2－11〕 이동전화 사업자별 ARPU 추이(무선 재판매 포함)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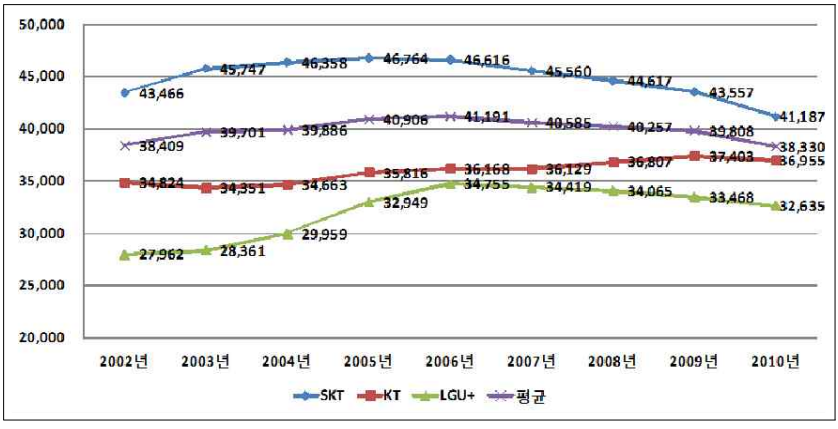

주: ARPU는 소매 매출액을 가입자 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2) 시장집중도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점유율 비율, HHI 등으로 측정한 시장 집중도는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1위 사업자의 강한 지배력이 존재하여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이동통신시장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제도적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진입 장벽, 규제 산업에 따른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시장 구조 변화가 활발하지 않다.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와 이동통신 매출액 기준으로 본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2004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계속 50%가 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9]

9) 시장집중도 비율(CR: Concentration Ratio)은 대체로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적 시장인지 독과점 시장인지를 판별한다. 일반적으로 1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CR1)이 50%이상이면 독점(Monopoly)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동통신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50%를 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위와 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CR2)가 75% 이상이면 복점(Duopoly), 1위부터 3위 사업자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CR3)가 75% 이상이면 과점(Oligopoly)으로 해석한다. 1위부터 4위 사업자까지의 시장점유율 합계(CR4)가 40% 정도면 경쟁적 시장, 90% 이상이면 독점적 시장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림 2－12〕 이동전화 1위 사업자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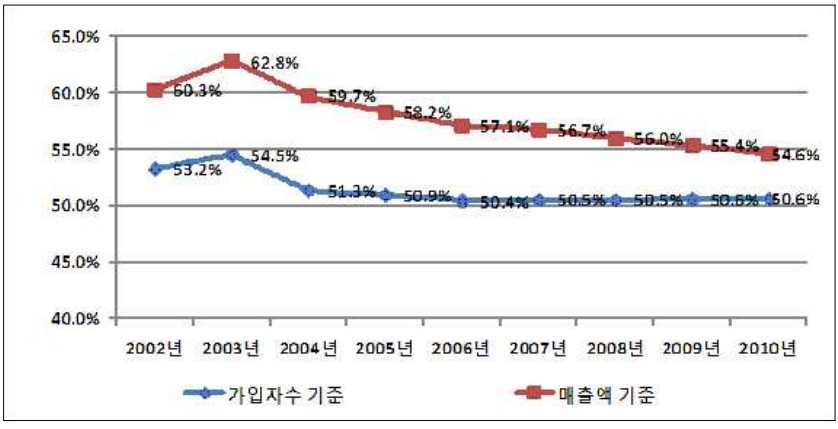

자료: 통신정책연구실 요금회계연구그룹(2011)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한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장집중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05년 이전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1위 사업자와 2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30%를 넘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30%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 말 매출액 기준 SK텔레콤과 KT의 시장점유율 격차는 24.2%이다. 그러나 가입자 수 기준으로

〔그림 2－13〕 이동전화 1위, 2위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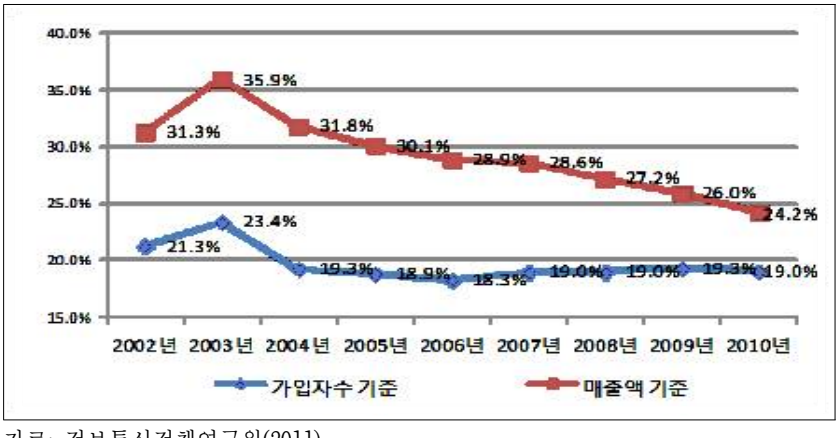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본 점유율 격차는 2004년 이후에는 1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허핀달-허시먼 지표(HHI: Herfindahl-Hirschman Index)[10]로 측정한 시장집중도 지표 역시 소폭 하락 추세이긴 하나 큰 변화는 없다. 매출액으로 측정한 HHI 지수는 2003년 4,775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HHI 지수는 4,114를 기록하였다.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한 HHI 지수의 하락은 이동통신 시장의 독점 현상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입자 수 기준으로 측정한 HHI 지수는 2004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2-14〕 이동전화 HHI 지수 추이(무선재판매 포함)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3) 진입장벽

진입장벽(Entry Barriers)이란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산업에 진입하여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부딪치는 장애를 의미한다. 시장에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경쟁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고, 시장은 고착화된다. 이동통신 시장은 주파수 제한에 따른 제도적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에 따른 진입 장벽, 규제 산업에 따른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 시장 구조 변화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10) HHI는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시장점유율(%)의 제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며, HHI의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도가 높다.

우선,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는데, 주파수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이론적으로 주파수 자원은 무한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동통신에 사용가능한 주파수 대역은 한계가 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대역의 주파수는 전파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 현재의 기술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타 사업자와 동일한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로밍 및 단말 호환 등의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주파수 자원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적절한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주파수 자원의 제약은 이동통신 시장의 큰 진입장벽이다.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만큼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공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최초로 경매 방식으로 할당하였다. 경매 결과 SK텔레콤이 1.8GHz 대역의 20MHz 폭의 주파수를 9,950억 원에, KT가 800MHz 대역의 10MHz 폭의 주파수를 2,610억 원에, LGU+가 2.1GHz 대역의 20MHz 폭의 주파수를 4,455억 원에 가져갔다. 이번 경매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입찰가가 계속 상승하여 SK텔레콤은 주파수 비용으로 1조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 역시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동통신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에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따른 진입장벽도 존재한다. 이동통신 시장에는 가입자 수와 통화량이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기까지는 단위당 원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규모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에서 나타난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에 전국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고, 기지국 등을 비롯한 통신 설비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매우 크다. 그러나 일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후에는 이용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당 평균 비용은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한다. 가입자 수와 통화량이 많은 사업자의 착신 접속료율이 가입자 수와 통화량이 적은 사업자의 접속료율보다 더 낮은 것은 통신 시장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하나의 근거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수가 3~4개

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 장벽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통신 산업이 규제 산업에 속하는 것도 이동통신의 시장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하나의 이유이다. 전기통신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시장의 자율에 그대로 맡겨두면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또한 전기통신서비스는 온 국민이 마땅히 제공받아야 하는 보편적서비스(Universal Service)[11]라는 인식도 강하기 때문에 전기통신 산업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지정 및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시장에 진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의 M&A 및 사업의 양수, 합병,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 등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대상이다.

3. 신규 사업자의 진입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통신 시장에 경쟁을 유도하여 통신 서비스 이용자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규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망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이미 통신 설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게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SK텔레콤, KT, LGU+와 같이 하나의 새로운 독립적인 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키는 방법이다.

가. MVNO의 진입

주파수 제한으로 인한 진입장벽과 규모의 경제로 인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였다.[12]

---

11)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보편적 서비스라고 한다.

1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표 2－1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매제공 제도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도매제공 제도의 취지가 경쟁 촉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MVNO 제도가 도입되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 이 때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라고 하고, 전기통신설비를 빌려주는 사업자를 이동통신망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MVNO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SK텔레콤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규정되었다. 11월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42호)'을 신설하여 MVNO 제도 운영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MVNO 제도가 도입된 후 SK텔레콤에 MVNO 사업 협정 신청을 한 사업자는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몬티스타텔레콤, S로밍, 인스프린트, 에넥스텔레콤, 한국정보통신, 케이디씨정보통신, 케이티스, 에버그린모바일, 에스케이텔링크, 아이즈비전, 케이티링크, 씨엔커뮤니케이션, 대성홀딩스 등 15개 사이다. 이 중에서 일부 업체는 MVNO 사업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나, 다른 MNO와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SK텔레콤과 협정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아이즈비전, KCT, 한국정보통신 3사이다.

KT로부터 망을 빌려 재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2011년 8월 기준으로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S로밍, 인스프리트 8개 사이고, LGU+로부터 망을 빌려 MVNO 재판매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비앤에스솔루션, 자티전자, 에프아이텔, 리더스텔레콤, 인터파크(e-Book) 7개사이다.

〈표 2－13〉 국내 재판매사업자(별정 2호, 4호) 현황(서비스 미제공사업자 제외)

(2011년 8월 말 기준)

구 분			매출액[13] (백만원)	가입자수 ('11년 8월 기준)	비고
서비스 제공사업자 (MNO)	재판매사업자 (MVNO)	등록일			
SKT (3개)	아이즈비전	'11. 5	64	2,029	'11년 7월 서비스 개시
	KCT	'10. 10	24	515	
	한국정보통신	'11. 3	3.8	1,085	
KT (8개)	에넥스텔레콤	'03. 12	45,316	172,377	
	에버그린모바일	'99. 9	2,566	34,496	'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매출액임
	KT파워텔	'04. 4	3,130	35,657	'1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매출액임
	프리텔레콤	'10. 1	1,573	39,958	
	씨엔커뮤니케이션	'10. 5	376	2,100	
	위너스텔	'01. 7	142	4,153	'11년 5월 서비스 개시
	S로밍	'11. 6	19	1,360	'11년 7월 서비스 개시
	인스프리트	'11. 6	–	300	'11년 8월까지 프로모션(무료서비스) 기간으로 매출액 없음
LGU+ (7개)	몬티스타텔레콤	'04. 7	1,780	13,790	
	씨엔엠브이엔오	'05. 6	2,920	14,424	
	비앤에스솔루션	'04. 4	880	4,945	
	자티전자	'06. 6	20	343	
	에프아이텔	'00. 11	10	241	
	리더스텔레콤	'02. 10	4	42	
	인터파크(e-Book)	'10.1	–	8,054	e-Book 제공 사업자로 MVNO 사업 매출액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음
18개	합계		58,827	335,869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13) 매출액은 사업자가 집계한 MVNO 사업 관련 '11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매출액 합계(단말, 서비스 등)이며, '11년에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 시점부터 8월까지의 매출액 합산임

현재까지 MVNO 시장은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1년 8월 기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196만 명인데, MVNO 서비스 가입자 수는 33.6만 명에 그쳐 가입자 수 기준 MVNO의 시장점유율은 0.6%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KCT가 2011년 하반기에 후불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고, 2012년 상반기에 후불제 번호이동성이 가능해지면, MVNO들도 니치시장을 공략하면서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에 나설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MVNO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MVNO 활성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나. 신규 MNO의 진입

경쟁활성화의 측면에서 신규 MNO의 진입은 일반적으로 MVNO의 진입보다 우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와이브로 기술에 기반한 이동통신사업자를 시장에 진입시켜 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허가심사 등에서 허가신청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의 수행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 동안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선정과 관련되어서는 총 3차례의 허가심사가 진행되었다. 10년 하반기, 그리고 11년 상반기에 추진된 제1, 2차 허가심사에서는 KMI가 단독으로 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심사 결과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 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11년 하반기에 진행된 제3차 허가심사에서는 KMI와 IST에 대한 허가심사가 진행되었으나, KMI와 IST 모두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했다.[14]

제 2 절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1.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가. 개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무선통신서비스의

14)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라.

경우에 기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추가적인 허가절차 없이 주파수를 할당을 받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주파수 할당이 사업허가와 통합운영되어 별도의 할당심사 없이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였으나, 2008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기간통신 역무 통합에 따른 허가단위의 일원화 및 진입규제의 완화가 추진됨에 따라, 전파법에 별도의 주파수 할당 절차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림 2-15〕는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의 변천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의 경우 무선통신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이 모두 필요 했으며, 그 절차가 주파수 할당공고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인 사업자 선발은 허가절차를 통해서 결정되고, 허가절차를 통해 선발된 사업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주파수 할당과 사업허가가 서로 독립적인 행정절차로 규정, 기존 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할당 절차만을,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절차를 모두 거쳐야 비로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그림 2-15〕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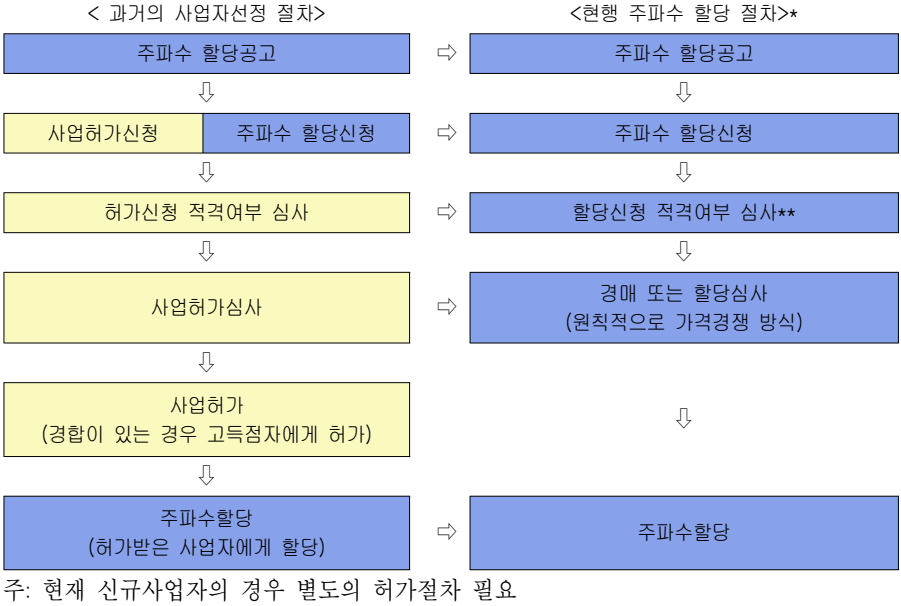

주: 현재 신규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허가절차 필요

나.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시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 및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15]

현행 허가제도는 수시허가를 기본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

〈표 2－14〉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제9조(허가신청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0. 10. 1〉 ②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1.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안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1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전기통신설비의 고도화를 위한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안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16)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이하 허가고시) 제14조, 심사 기간 연장시 연장 기한의 제한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3.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식소유 제한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1. 법인(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2.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4, 2010. 10. 1〉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7]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17) 과거,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고 있던 역무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역무추가에 따른 변경허가가 필요하였으나, 기간통신사업 역무통합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추가적인 허가절차 없이 새로운 사업 제공이 가능하도록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음에 따라, 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기간통신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표 2－15〉 기간통신사업의 변경 허가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허가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변경허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1. 삭제<2010. 10. 1> 2. 삭제<2010. 10. 1>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0. 10. 1> ③ 삭제<2010. 10. 1> ④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 10. 1>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일부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이를 합병하는 경우 취득인은 기존사업자의 허가의 승계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18] 이에 따라, 서비스별로 허가의 강도가 상이할 경우 논리적으로 비교적 진입이 용이한 서비스에 대한 허가를 획득하려는 우회진입으로 추정되는 양수합병 및 인수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나 현재 현재까지 우회진입으로 추정되는 M&A 및 허가신청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18)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제4항

〈표 2－16〉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허가를 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제20조(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0. 10. 1〉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2. 양도·양수인의 정관 및 양도·양수 관련 증빙서류 3. 양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양도·양수인의 사업현황 5. 양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1. 합병 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의 정관 및 합병 관련 증빙서류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합병당사자의 사업현황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매각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회선설비매각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1.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매수 계약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2. 매각·매수인의 정관 및 매각 · 매수 관련 증빙서류 3. 매수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와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사업을 양수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제1항제6호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인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의결권 행사의 정지나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고, 제5항에 따라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조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통신망 통합 2. 임원의 임명행위 3. 영업의 양수, 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	4. 매각·매수인의 사업현황 5. 매각 후의 사업계획서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는 기간통신사업 주식소유(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을 하려는 목적과 사유 및 주식취득에 따른 효과분석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최대주주가 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1. 주식취득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등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행위 관련 증빙서류 2.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정관 3.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4. 주식매수인 또는 협정당사자 및 상대회사의 사업현황 5.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의 목적과 사유 및 효과 분석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⑩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익성심사의 대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할 때 공익성심사 요청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6. 임원겸임계획서(상대회사의 임원겸임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주식취득 또는 협정체결 후의 사업계획서 ⑥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0. 10. 1〉 1.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3.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그 최대주주와 영업임대 또는 경영위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협정을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경우 4.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다른 주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의결권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려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허가받아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제공 법인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1. 설립예정법인의 정관 2. 설립예정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3. 제공하려는 역무의 사업현황(법인을 설립하여 제공하려는 역무를 제공 중인 기간통신사업자만 해당한다) 4. 설립예정법인의 사업계획서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인가신청서 및 각 호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0. 10. 1〉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수·합병·매각·최대주주변경·주식취득·협정체결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합병·매각·최대주주변경·주식취득·협정체결 또는 법인설립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⑩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양수·합병 또는 법인설립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다. 주파수 할당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전송망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이용기간,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대가할당이나 심사에 의한 할당을 통해 이뤄지며, 주파수 할당 후 이용기간 종료 후에 해당 주파수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전파법 제16조의1) 할 수 있다.

〈표 2－17〉 주파수 할당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제10조(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22〉 1.「전기통신사업법」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2.「방송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 삭제〈2009. 3. 13〉 〔전문개정 2008. 6. 13〕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개정 2008. 12. 9, 2010. 12. 31〉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6의3.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주파수할당을 하는 날부터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11조는 대가할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격경쟁방식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해 미리 산정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18〉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제11조(대가에의한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주파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1.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과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2.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주파수할당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주파수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때에 내도록 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자가 주파수할당의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신	제14조(주파수할당대가의산정기준및부과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별표 3 제3호에 따라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할당대가를 부과하는 경우 매년 납부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보증금) ①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란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주파수할당대가 중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금의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08. 12. 9〉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의 목적이 되는 주파수를 할당한 경우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9〉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청을 철회하거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 용하지 아니하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보증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내는 주파수할당 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한다. ⑦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6. 13〕	

〈표 2－19〉 기간통신사업의 제공을 위한 주파수 할당의 유형

할당방식	대가할당		심사할당
	경매(가격경쟁)	심사를 통한 대가할당	
적용기준	• 경쟁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를 적용	• 경쟁적인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대가할당 이외의 경우
심사기준	• 전파법상 입찰인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규정 부재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주파수 할당이 기간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2.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3.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4.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주: 할당방식의 적용기준에 관해 전파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해당 주파수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경우에는 대가할당을,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공공성 등이 큰 경우에는 심사할당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국내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필요성

가. 신규사업자에 대한 행정절차 적용의 선후 관계

신규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두 행정절차의 선후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현행 전

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경우 허가와 주파수 할당이 서로 연관성[19]을 갖고 있지만, 그 선후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은 서로 독립적인 행정절차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제도로 인해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신규사업자 및 규제기관 입장에서 혼란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나. 단수의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먼저,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하나의 신규사업자가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의 유사성 여부가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한다. 즉, 두 심사기준이 대동소이한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현재의 무선통신 진입규제는 규제 중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사업허가의 심사기준은 경우 크게 ①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② 재정적 능력, ③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파수 할당은 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② 재정적 능력, ③ 기술적 능력의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허가와 대비한 주파수 할당 심사의 특수성은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 트래픽 수용 및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 등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심사의 독자적인 의의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 단일한 사업자에 대한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 심사는 서로 병합하여 심사하는 등 행정적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노력하고 있다.

---

19) 사업허가시 허가신청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공고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파법상 기간통신사업 허가결격 사유(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 할당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사업자가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허가와 주파수 할당의 선후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전파법 제15조2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할당 취소전 1회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했다고 해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으나, 이 경우 허가사업계획서의 이행이 불가함에 따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표 2－20〉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등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50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비계량(8점)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비계량(7점)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	비계량(4점)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비계량(6점)
	1.5 이용자보호 계획	비계량(5점)
	1.6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비계량(4점)
	1.7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6점)
	1.8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등 투자계획의 효율성	
	1.8.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비계량(5점)
	1.8.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5점)
2.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비계량(7점)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	계량(3점)
	2.2.2 안정성: 부채비율	계량(3점)
	2.2.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계량(3점)
	2.2.4 신용등급	계량(3점)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사항 1, 심사사항 3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6점)
3. 제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25점)	3.1 해당역무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비계량(6점)
	3.2 해당역무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술적 기여도	비계량(5점)
	3.3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비계량(8점)
	3.4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	비계량(3점)
	3.5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비계량(3점)

〈표 2－21〉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WiBro, 2010년 12월)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등
1.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50점)	1.1 네트워크 구축계획의 적정성 1.2 소요설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1.3 녹색 방송통신 기술계획의 우수성 1.4 트래픽 수용 및 전파간섭대책의 우수성 1.5 서비스 제공계획의 적정성 1.6 통신시장의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비계량(10점) 비계량(10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비계량(10점) 비계량(10점)
2. 재정적 능력 (25점)	2.1 자금 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총자산 세전이익률 2.2.2 안정성: 부채비율 2.2.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2.4 신용등급 2.3 심사사항 1, 3과 자금 조달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7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비계량(6점)
3. 기술적 능력 (25점)	3.1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 3.2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3.3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의 우수성 3.4 해당 역무 관련 기술인력 확보계획의 우수성	비계량(7점) 비계량(8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100점	－	100점

다. 복수의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다음으로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 두개의 신규사업자가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이라는 행정절차의 적용은 그 선후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두 사업자에 대한 사업허가를 먼저 진행하고 허가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할당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자, 이 경우 사업허가는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로, 두 사업자 중 하나를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20] 사업허가를 먼저 적용할 경우 허가심사 결과에 따라

20) 현행 허가고시는 "허가신청법인간 경합이 있는 역무의 경우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13조제5항) 이는 허가에 있어서의 경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복수의 사업자에게 허가를 줄 수 있는 현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두 사업자가 모두 합격하는 경우 경매를 통한 대가할당 추진, 한개 사업자만이 합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한 대가할당 추진, 모두 탈락하는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 종료될 것이다.[21] 선허가의 장점으로는 허가심사를 통해 사업자의 능력에 대한 일정한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사업에 부적합한 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즉, 사전심사 성격의 허가제도 운용을 통해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만을 우선시 하는 현행 경매제도의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한개의 사업자만이 허가를 획득해 경매제도의 적용이 배제될 경우, 정책판단을 통해 경매제의 적용을 회피했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 선정절차의 공정성 측면에서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22]

둘째, 주파수 할당을 먼저 진행하고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해당 주파수 자원에 대한 경쟁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임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절차로써 경매제도를 채택해야 하며, 경매에서 탈락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주파수 할당공고가 소멸(가용 주파수 자원의 소멸)됨에 따라 이에 대해 허가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선할당의 장점은 경매라는 정책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가 낮은 절차를 통해 할당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 사업자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경매제의 적용에 따라 가격경쟁을 통한 할당 대가 상승 가능성 등 경매제의 일반적인 장점들이 발휘될 가능성 존재한다. 다만, 이 경우 기술력 등의 측면에서 와이브로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경우 이와 같은 우려는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가능하며, 할당 후 사업개시전, 허가심사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안도 존재하나, 현실적으로 이미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에 대한 허가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선할당을 통한 사업자 선발은 사업허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때 본건의 경우 허가 측면에서 경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21) 두 사업자가 허가를 받는 경우,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사업권은 “사업개시의무”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임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다.

22) 현행 허가제도는 허가심사 탈락 후 재허가를 신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한번 허가에서 탈락한 사업자를 경매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경우 주파수 할당은 경매를 통해 진행되며,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할당 전/후와 무관하게 사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할당 절차의 적용시 사업허가 획득 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선할당과 유사하며, 최종사업자 선정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허가와는 중요한 차별성을 지닌다. 이는 예를 들어, 선허가의 경우 A라는 사업자만이 허가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 B라는 사업자만이 주파수 할당의 자격을 지니게 되는 반면, 허가와 주파수 할당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안의 경우 A가 경매 실시전 허가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고 재허가신청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진행방식은 주파수 할당 절차가 허가심사 결과를 조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경매제의 적용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발생 차단하다는 장점 및 허가심사가 주파수 할당 결과를 조건으로 하지 않음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나, 두 제도의 독립적 적용에 따라 논리적으로 '허가심사 탈락 – 경매를 통한 주파수 획득' 등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규제기관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주요국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현황

제1절 미 국

1. 서비스 분류 및 진입 규제

가. 서비스 분류

미국은 정보통신서비스를 통신서비스와 정보서비스로 구분한다. 사업자는 공중전기통신사업자(Common Carrier)와 비공중전기통신사업자(Non-Common Carrier)로 분류한다. 1996년 통신법 47 U.S.C. § 153(43)에 따르면 통신서비스는 "사용되는 설비에 관계없이 공중에게 직접 또는 공중의 효과적인 직접 이용을 위한 여러 계층의 이용자에게 유상으로 통신(telecommunications)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통신은 사용자가 지정한 복수 지점간에 송·수신되는 정보의 형식과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보서비스는 1996년 통신법 47 U.S.C. § 153(20)에서 "통신을 통하여 정보를 생산·획득·저장·가공·변형·처리·검색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정보서비스의 정의는 고도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신서비스와 달리 특정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표 3－1〉 미국의 전기통신서비스 분류

구 분	내 용
통신 서비스	– 이용자에 의하여 특정화된 지점 간 정보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화가 없이 이용자가 선택한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23] – 이용되는 설비를 불문하고 대중 또는 특정사용자 집단에게 직접적으로 이용료를 대가로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24]
정보 서비스[25]	– 정보의 생산, 획득, 축적, 가공, 변환, 수정, 이용 또는 통신을 통한 가치 있는 정보의 생성능력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자출판은 포함되지만 통신시스템의 관리, 통제, 운영을 위한 서비스 또는 통신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서비스는 제외

통신서비스는 크게 유·무선으로 나뉘고 유선은 국제, 시외(주간, LATA[26]간 시외통신, LATA 내 시외통신), 시내(LATA 내 통신), 재판매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무선은 셀룰러/PCS와 무선호출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27]

진입규제와 관련하여, 주간(interstate) 통신서비스(국제전화 제외)는 허가가 불필요하고, 주내(intrastate)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각 주의 공공위원회(PUC; Public Utility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파수 이용 관련 허가는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로부터 별도 취득하며, 현재 통신법 310조에 따라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선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진입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고 주파수 할당으로 대변되는 무선통신서비스 진입규제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나. 주간통신(Interstate Communications) 사업자의 진입절차

1999년 이전에는 47 U.S.C. § 214에서 면제되고 있는 회선 즉, "단일주내(a single state)

---

23) [47 U.S.C. § 153] DEFINITIONS(43) Telecommunications: The term "telecommunications" means the transmission, between or among points specified by the user, of information of the user's choosing, without change in the form or content of the information as sent and received.

24)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e term "telecommunications service" means the offering of telecommunications for a fee directly to the public, or to such classes of users as to be effectively available directly to the public, regardless of the facilities used.

25) 〔47 U.S.C. 153〕 DEFINITIONS, (20) Information service: The term "information service" means the offering of a capability for generating, acquiring, storing, transforming, processing, retrieving, utilizing, or making available information via telecommunications, and includes electronic publishing, but does not include any use of any such capability for the management, control, or operation of a telecommunications system or the management o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26) LATA(Local Access and Transport Area)는 AT&T 분할시 지리적으로 획정된 교환구간을 의미한다.

27) 사업자 분류에 있어 미국은 ① 공중(公衆)의 모든 잠재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to the public or to classes of the public incorporates)여야 하고, ② 전송시 본래 형식과 콘텐츠는 불변하는(pure transmission)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Common Carrier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기준으로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Common Carrier와 Non Common Carrier로 분류가 가능하다.

통신 회선, 10마일 이내의 지방 가입자 회선, 47 U.S.C. § 221 전화회사의 인수합병에 의한 회선 등"을 제외하고 모든 회선 설비 구축 및 획득은 FCC의 승인을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1999년 7월 FCC가 47 C.F.R. § 63.01을 신설하면서, Common Carrier는 인수합병을 제외한 주간통신 서비스의 설비, 획득, 운영 관리에 대한 포괄면허(blanket license)를 부여받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시장진입이 가능해졌다. 단, 주파수 이용에 관련해서는 FCC의 심사절차를 필요로 하며, 환경파괴 등에 우려가 있는 회선선로의 경우에도 포괄면허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47 C.F.R. § 63.01 Authority for all domestic common carriers.

(a) Any party that would be a domestic interstate communications common carrier is authorized to provide domestic, interstate services to any domestic point and to construct or operate any domestic transmission line as long as it obtains all necessary authorizations from the Commission for use of radio frequencies.

(b) Domestic common carriers subject to this section shall not engage in any line construction that ma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vironment as defined in § 1.1307 of this chapter without prior compliance with the Commission' s environmental rules. See § 1.1312 of this chapter.

〔64 FR 39939, July 23, 1999, as amended at 67 FR 18830, Apr. 17, 2002〕

한편, Common Carrier의 인수합병 등을 통한 소유지분 이전에 따른 자산변동으로 나타난 회선의 이전은 FCC의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 국제통신(International Service) 사업자의 진입절차

통신서비스를 국제권역으로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FCC의 개별면허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해외 국가와 통신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해저케이블(Submarine cable)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대통령의 면허를 필요로 하며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47 U.S.C. § 34-39이다.

개별면허 심사시 기준이 되는 것은 ① 공익성(public interest), ② 편리성(convenience), ③ 필요성(necessity)이며, 1998년 FCC가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Streamlined proceeding procedure"를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a) 접속 해당 국가에서 지배적 시장지배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거나, b) 미국내 지배적 시장사업자가 아니거나, c) 사설회선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후 14일 경과되면 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

47 U.S.C. § 34 Licenses for landing or operating cables connecting United States with foreign country; necessity for
No person shall land or operate in the United States any submarine cable directly or indirectly connecting the United States with any foreign country, or connecting one por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any other portion thereof, unless a written license to land or operate such cable has been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conditions of sections 34 to 39 of this title shall not apply to cables, all of which, including both terminals, lie wholly with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2002년 이후 FCC가 "Streamlining Orders"의 범위를 해저케이블 부분까지 확대하면서 소유권의 실질적 이동이 없는 형식상 양수(pro forma assignment)에 대해 "면허의 양도나 이전(Transfer of control)"이 가능하며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 없게 되었다.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가. 상업용 무선통신(CMRS;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사업자의 진입절차

무선통신서비스 규제 전반의 권한은 FCC에 있으며, 47 U.S.C. § 303에서는 FCC의 권한을 무선국 분류, 주파수 대역 분배, 무선국 관련 규제 및 무선국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실험

47 U.S.C. § 332 Mobile Services.
〈중략〉
(3) State preemption-(A) Notwithstanding sections 152(b) and 221(b) of this title, no State or local government shall have any authority to regulate the entry of or the rates charged by any commercial mobile service or any private mobile service, except that this paragraph shall not prohibit a State from regulating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of commercial mobile services.(중략)
Notwithstanding the first sentence of this subparagraph, a State may petition the Commission for authority to regulate the rates for any commercial mobile service and the Commission shall grant such petition if such State demonstrates that —
(i)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such services fail to protect subscribers adequately from unjust and unreasonable rates or rates that are unjustly or unreasonably discriminatory; or
(ii) such market conditions exist and such service is a replacement for land line telephone exchange service f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telephone land line exchange service within such State.

및 조사 등으로 밝히고 있다. 47 U.S.C. § 332(c)(3)에서는 주 및 지방정부가 무선통신서비스의 시장진입이나 요금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① 시장조건이 요금 및 이용자 보호 등에서 불공정하게 나타날 경우, ② 무선통신서비스가 주내의 유선전화회선에 대한 위협적 대체가 나타날 경우에 대해 주 및 지방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 해결을 위해 FCC에 탄원할 수 있다.

C.F.R. § 20.9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

(1) Private Paging(part 90 of this chapter), excluding not-for-profit paging systems that serve only the licensee's own internal communications needs;
(2) Stations that offer Industrial/ Business Pool(§ 90.35 of this chapter) eligibles for-profit interconnected service;
(3) Land Mobile Systems on 220~222 MHz(part 90 of this chapter), except services that are not-for-profit or do not offer interconnected service;
(4) Specialized Mobile Radio services that provide interconnected service(part 90 of this chapter);
(5) Public Coast Stations(part 80, subpart J of this chapter);
(6) Paging and Radiotelephone Service(part 22, subpart E of this chapter).
(7) Cellular Radiotelephone Service(part 22, subpart H of this chapter).
(8) Air-Ground Radiotelephone Service(part 22, subpart G of this chapter).
(9) Offshore Radiotelephone Service(part 22, subpart I of this chapter).
(10) Any mobile satellite service involving the provision of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by licensees or resellers) directly to end users, except that mobile satellite licensees and other entities that sell or lease space segment capacit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provide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directly to end users, may provide space segment capacity to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providers on a non-common carrier basis, if so authorized by the Commission;
(11) 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part 24 of this chapter),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b) of this section;
(12) Mobile operations in the 218~219MHz Service(part 95, subpart F of this chapter) that provide for-profit interconnected service to the public;
(13) For-profit subsidiary communications services transmitted on subcarriers within the FM baseband signal, that provide interconnected service(47 CFR 73.295 of this chapter); and
(14) A mobile service that is the functional equivalent of a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47 U.S.C. § 332(d)(1)은 CMRS 사업자가 Common Carrier이고, 47 U.S.C. § 332 d(2)에서는 PMRS(Private Mobile Radio Service) 사업자는 Common Carrier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

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관성 있는 규제를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C.F.R. § 20.9에 규정된 CMRS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나. 주파수 할당

미국의 주파수 관리는 연방용은 상무성 소속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민간용은 FCC가 관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전파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통신법내의 무선관련 규정(Title Ⅲ)과 연방규정집 47 C.F.R., 기타 관련 FCC 규칙을 통해 주파수를 관리한다.

47 U.S.C. § 301에 따라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FCC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시 부여된 조건과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도 만료된다. 주파수 이용에 대한 허가는 FCC로부터 별도 취득하며 주파수 경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47 U.S.C. § 310(a)에 의거 외국인 및 외국정부의 무선국 허가는 금지되고 있으며, 47 U.S.C. § 310(b)의(3), (4)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이 일정수준 이상[28]인 경우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다. 한편 47 U.S.C. § 310(d)에서는 주파수 이용권에 양도 및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FCC는 "Streamlining

U.S.C. § 310 License ownership restrictions.
(중략)
(d) No construction permit or station license, or any rights thereunder, shall be transferred, assigned, or disposed of in any manner,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directly or indirectly, or by transfer of control of any corporation holding such permit or license, to any person except upon application to the Commission and upon finding by the Commission that the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 will be served thereby. Any such application shall be disposed of as if the proposed transferee or assignee were making application under section 308 of this title for the permit or license in question; but in acting thereon the Commission may not consider whether the public interest, convenience, and necessity might be served by the transfer, assignment, or disposal of the permit or license to a person other than the proposed transferee or assignee.
－후 략－

28) ① 직접투자지분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이 20%를 넘거나, ② 간접투자지분의 경우 모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25% 이상인 법인 중에서, FCC가 실시하는 공익 심사에 미달될 경우이다.

Orders"를 통해 CMRS에 대해 주식 소유구조의 실질적 변화나 경영권의 변화를 주지 않은 수준에서의 면허의 양도나 이전에 포괄면허(blanket license)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격경쟁기반의 주파수 할당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의 주파수 할당방식으로는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 비교청문회(comparative hearing), 추첨(lottery) 등이 이용되었다. 처음에는 주파수의 유휴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수요가 많지 않아 선착순 방식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점차 많아지면서 경쟁적인 수요자 중에서 가장 적격인 자를 선정하는 비교청문회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 방식은 사업자 선정기준의 정당성 시비, 선정과정에서 행정비용 발생, 선정의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래서 1980년 초에 비교청문회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추첨 방식을 통하여 면허를 부여하였으나 이 방식 또한 서비스의 제공능력도 없으면서 당첨 후 재판매를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주파수 할당방식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였다.

주파수 할당방식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990년 초 PCS 사업허가를 위해 경매방식(auction)이 고려되었으며, 1993년 의회는 FCC에게 경매를 통하여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경매방식의 도입목적은 공공 이익보호, 신기술과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시골지역 포함), 면허의 집중방지, 경제발전 및 경쟁촉진, 전파자원 경제적 가치의 사회 환원 및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촉진 등이었다.

〈표 3－2〉 미국의 주파수 할당 방식 연혁

주파수배분방식	시 기
선착순 방식	1927~1940년대 말
비교청문회 방식	1940년대 말~1993
추첨방식	1981~1993
경매방식	1994~

한편, Communication Act에는 기존사업자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FCC가 공공이익·편리·필요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존 허가 만료일로부터 8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갱신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매할당 주파수에 대해서도 FCC 규정, 정책, 통신법의 실질적 준수 및 실질적인 서비스(substantial service) 제공 입증

을 통해 갱신 가능성(renewal expectancy)을 부여하고 있다. FCC는 사업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및 갱신 심사의 임의성을 줄이기 위해 초기 면허 부여시에 'safe Harbor'라 불리는 최소한의 자동갱신 요건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갱신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제2절 영 국

1. 서비스 분류 및 진입규제

가.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영국은 EU의 분류체계를 준용하여, 통신서비스를 ECN/ECS, PECN/PECS, PATS로 구분하고 있다. ECN(EC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은 EU의 정의[29]를 따르며, ECS(ECS;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는 콘텐츠 서비스를 제외하고 ECN의 신호를 전송함에 있어 존재하거나 신호전송에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30] PECN(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이란, 공중(公衆)이 사용가능한 ECS를 뜻한다.[31] PATS(Publicly Available Telephone Service)란, 공중(公衆)으로 하여금 계획된 번호

29) Framework Directive Article 2(a)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means transmission systems and, where applicable, switching or routing equipment and other resources which permit the conveyance of signals by wire, by radio, by optical or by other electromagnetic means, including satellite networks, fixed(circuit-and packet-switched, including Internet) and mobile terrestrial networks, electricity cable system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used for the purpose of transmitting signals, networks used for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and cable television networks, irrespective of the type of information conveyed"

30) Framework Directive Article 2(c)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means a servic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which consists wholly or mainly in the conveyance of signals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including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nd transmission services in networks used for broadcasting, but exclude services providing, or exercising editorial control over, content transmitted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it does not include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as defined in Article 1 of Directive 98/34/EC, which do not consist wholly or mainly in the conveyance of signals o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체계 하에서 1) 국내 및 국제 전화의 송수신을 가능케 하거나, 2) 위급시 국내 및 국제 전화를 통한 접속이 가능케 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32)33)]

영국의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크게 ①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Providers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networks 이하 ECS/ECN), ② 공공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Providers of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or networks 이하 공공 ECS/ECN), ③ 공공 전화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Providers of publicly available telephone services or public telephone networks; 이하 PATS)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ECS/ECN은 가장 넓은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사업자 영역으로,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

---

31) U.K Communications Act of 2003 section 151 Interpretation of Chapter 1 "public communications provider" means-
(a) a provider of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b) a provider of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or
(c) a person who makes available facilities that are associated facilities by reference to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or a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means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provided wholly or mainly for the purpose of making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available to members of the public;
"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means any 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that is provided so as to be available for use by members of the public;

32) DIRECTIVE 2002/22/ EC Article 2(c) "publicly available telephone service" means a service available to the public for originating and receiv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calls and access to emergency services through a number or numbers in a national or international telephone numbering plan, and in addition may, where relevant, include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ervices: the provision of operator assistance, directory enquiry services, directories, provision of public pay phones, provision of service under special terms, provision of special facilities for customers with disabilities or with special social needs and/or the provision of non-geographic services.

33) 과거 영국은 통신 사업자를 기존에는 1984년 통신법 제8조, 제9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중 DTI 장관이 공중전기통신설비(Public Telecommunication System)로 지정한 설비를 운용하는 PTO(Public Telecommunication Operators, 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 그 외의 Non-PTO(비공중전기통신사업자)로도 분류하고, 종별면허(Class license) 보유 사업자는 Non-PTO로 분류되며, 개별면허(Individual license)보유 사업자중 제공 서비스의 중요도에 따라 PTO와 Non-PTO로 분류하였다.

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 또는 개별, 유선 또는 이동 음성전화, 데이터 및 인터넷의 대부분의 사업자를 포괄한다. 여기에는 망 보유 사업자뿐만 아니라 망을 보유하지 않는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하지만, 단말기 제조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 ECS/ECN(PECS/PECN)에는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중 특정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속한다. 단, 사설 통신망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은 공공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PATS에는 공공 전화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있다. 공공 전기통신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중 공공의 이용자들이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음성전화 네트워크/서비스 제공 사업자 또는 재판매 사업자를 의미한다. 공공 ECS/ECN 중 데이터 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들은 '전화서비스'의 차원에서 제외되며, 토지 소유주에 의해 설치된 선불전화 서비스나 특정 가입자에게만 가능한 전화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비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공성(publicly)을 고려할 때 PATS의 분류에서는 제외된다.

나.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제도 도입에 따른 진입규제의 완화

영국은 2004년, 2002년 EU에서 모든 회원국들의 개별면허제를 폐지할 것을 합의한 것을 준수하여, 네트워크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시스템이 없는 재판매사업자도 포함)에 일반인가제를 도입하였다. 이 경우 일반인가라 통신사업자가 규제당국에 의해 사전에 부과된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특별한 허가절차 없이 등록수준의 규제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영국이 준용하고 있는 EU의 인가지침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통합(harmonized)된 시장을 확립한다는 것으로, 개별면허(Individual Licenses)를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로 대체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면허가 일반인가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는 허가와 같은 규제기구의 결정이나 행정 조치가 없이 통지(notification)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 때 예외적으로 주파수대역과 번호 할당의 경우 특별조건의 적용이 존속된다. EU의 지침에서 사업자가 시장진입 전에 유일하게 허가된 절차적 요구조건은 네트워크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신고 수준의 통지와 각국 규제기관이 사업자 등록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으로 제한한다.[34] 이 때 최소한의 정보에는 사

업자의 신원, 회사의 등록번호, 위치, 연락처와 개시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활동개시의 예정 시기 등이 포함된다.[35]

영국에서는 OFTEL이 일반인가의 개념으로서 21개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of Entitlement)을 제정·공표하고, 2003년 12월 23일부터는 Ofcom이 이를 지속하고 있다. OFTEL은 2003년 7월 22일에 사업승인(entitlement)을 위한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을 공표하고, 규제구조(framework), 사업승인(authorization), 접속 및 보편적 서비스(access and universal service) 지침을 2003년 통신법을 통하여 시행하였다. 일반조건은 49장 분량의 권리, 의무, 정의에 대한 사항을 포괄하며, 전기통신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개인, 혹은 해당 규정에 명기된 특정 종류의 네트워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허용가능한 일반의무의 범위와 내용을 상술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법 51-64조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영국은 커뮤니케이션법(The Communications Act 2003)에 따라 통신, 방송, 전파 분야의 기구 및 권한을 모두 통·폐합하여 Ofcom으로 일원화시켰다. 법 또한 기존에 전파를 관활하던 무선전신법(Wireless Telegraphy Act 1949; 1998; 2006)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제정된 통신법에는 통신·방송 및 일부 전파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무선국 또는 무선설비를 설치 및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무선전신법에 따라 Ofcom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Ofcom이 발행하는 면허는 소출력 무선기기 등과 같이 규격화된 기기 형태의 사전포괄면허(Pre-packaged licence), 무선국이 이용하는 주파수 지정 형태의 주문형면허(Customised licence), 특정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주파수면허(Spectrum Licences)의 3가지 형태로 나뉜다.

면허부여방법은 일반적으로 전국적 규모로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충분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고, 기타 기존 면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매년 전파의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금액을 행정가격(administrative price)으로 책정하고 면허갱신의 조건으로

34) Authorizations Directive Article 3(2)

35) Authorizations Directive Article 3(3)

〈표 3－3〉 영국의 무선국 허가 유형

구분	정 의
사전포괄면허 Pre-packaged	– 사전에 만들어진 기성품(off the shelf) 형식의 면허 – 대부분 특정 할당이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음 – 예: Citizen's Band Radio
주문형면허 Customised	– 특정 수요에 따라 절차(hand crafted)가 필요한 면허 – 간섭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별 할당, 경우에 따라 다른 서비스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 예: 고정 링크(Fixed links)
주파수면허 Spectrum	– 전체 주파수 블록(block)의 사용을 허용하는 면허 – 면허조건 범위에서, 면허권자는 가장 적절하게 블록을 이용할 수 있음 – 예: 공중무선 영역(Public networks area)

부과한다. 경매시의 절차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뤄지는 사전 자격심사(Pre-qualification Test)와 2단계(1차, 2차)의 경매를 거쳐 면허가 부여되는 순을 따른다. 1차 경매는 상호관계가 있는 입찰자들은 다음 2차 경매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경매로써, 상호관계가 있는 입찰자는 각각의 그룹을 형성하여 2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경쟁을 통해 최종 입찰자를 선정한다. 2차 경매는 미국 FCC에서 PCS 허가시 적용방식을 일부 변형한 것으로, 5개의 라이선스(라이선스 A, B, C, D, E)에 대한 경매가 각 라운드마다 동시에(simultaneously) 진행되며, 각 라이선스별로 현재가 보다 더 높은 입찰가가 제시되지 않을 때까지 경매가 진행된다.

한편, 커뮤니케이션법 등 최근 법안에서도 경매로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 만료 후 재할당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데, 이는 3G 등 경매를 통하여 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많이 남아있어 구체 조항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일 본

1. 개 요

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진입규제의 완화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1985년 4월, 전기통신시장의 전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을 규율하는 법률로써 시행되었으며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진입/퇴출, 전기통신설비, 토지 사용 등에 관한 규율이 정해져 있다. 1995년 10월, 행정 수속법의 시행에 아울러,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되는 인·허가의 심사 기준 및 표준 처리 기간이 책정, 공표되었다. 1996년 3월 31일 발표된 「규제 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진입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본격화 되었다.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기존의 제1종 전기통신사업 및 제2종 전기통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구분이 폐지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소규모 설비의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다만, 전파법에 의거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이외에도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면허,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율에 따라야 한다.

나. 서비스 분류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역무 또한 사업자 분류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구분 규정이 없어 사실상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명백한 분류는 존재하지 않으나, 2008년 6월 16일 수정된 총무성령 상의 용어정의 부분에 따라 구분된 전기통신역무는 음성전송, 데이터전송, 전용, 특정 이동통신 역무의 4개이며, 이와는 별도로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 첨부서류 양식 등에 전기통신역무에 해당하는 25개 통신서비스를 나열하고 있다.[36]

---

36) 가입전화, ISDN, 장거리전화, 국제전화 등(국제전화/국제ISDN), 공중전화, 휴대전화, PHS, IP전화, 인터넷접속, FTTH 액세스, DSL 액세스, FWA 액세스, CATV 접속, 휴대전화·PHS 단말을 통한 인터넷접속, 휴대전화·PHS 패킷 통신 액세스, 프레임 릴레이 서비스, ATM 교환, 공중 무선 LAN 액세스, IP-VPN, 광역 이더넷, 전용회선(국내/국제), 상기서비스를 이용한 부가가치 서비스, 인터넷관련 서비스(전자메일, 호스팅, IX, 무선호

〈표 3－4〉 총무성령에 따른 역무구분 내용

역무구분	종 류
음성전송	– 기본적으로 4㎑ 대역의 음성 이외의 음향을 전송 교환하는 기능을 가진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로 데이터전송 역무 이외의 것(음성과 기타 소리)
데이터전송	– 부호 또는 영상을 전송교환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전 용	– 특정 사람에게 전기통신설비의 독점적 사용을 허락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특정 이동통신	– 특정 이동 단말 설비와 접속되는 전송로 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 역무

주: 1) 역무의 유형으로는 국내·국제 등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이에 의한 역무구분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님. 역무구분 규제는 NTT 이외에는 없으며 예를 들면 장거리사업자에 의한 지역이나 국제 등의 역무 진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님
2) 전기통신 역무의 유형으로는 전기통신역무 종류마다 그 구분(예: 국내·국제)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 통신의 흐름에 관한 사항(예: 통신의 착·발신 구간 또는 구역)을 기재
자료: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최종개정 2008. 6. 16)

한편,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이용자 보호 등 규제정책의 목적에서 보면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지정전기통신역무, 특정전기통신역무를 정의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출 등), 전보, 상기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자료(총무성, 2006)

〈표 3－5〉 규제 정책의 목적상 역무구분

역무구분		내 용
기초적 전기통신 역무		– 국민생활에 불가결하기 때문에 널리 일본 전국에 걸친 제공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써 총무성령이 정하는 전기통신 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지정 전기 통신 역무	정의/ 구분	– 지정 전기통신 설비(제33조 2항)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 중 해당 역무가 다른 사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기타 이유 등으로 인해 해당 전기통신 사업자가 적정 요금, 기타 제공 조건 등에 따라 제공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한 전기통신 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1항)
	1종	– 전국의 구역을 나누어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상황 및 도도부현의 구역을 감안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구역별로 그 한쪽 단이 이용자의 전기통신 설비(이동 단말 제외)에 접속되는 전송로 설비 중 동일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것으로 그 전송로 설비의 전기통신회선 수가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것, 또는 해당 구역에 있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이것과 함께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로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의 총체를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이용자의 편리 향상 및 전기통신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발달에 불가결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1항)
	2종	– 전항과 동일하되 그 한쪽 단이 이용자의 이동 단말 등에 접속되는 설비(전기통신 사업법 제34조1항)
특정 전기통신 역무		– 지정전기통신 역무 중 그 내용, 이용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총무대신이 매년 1회 총무성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해 정해지는 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자료: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최종개정 2008. 5. 30)

이하에서는 일본의 등록 절차 및 관로포설 및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승인 절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다.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절차

전기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의 신청 서류와 함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 신청서
ⅰ)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ⅱ) 업무 구역
ⅲ)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나. 첨부 서류
ⅰ)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서류(양식 제2)
ⅱ) 네트워크 구성도(양식 제3)
ⅲ) 제공하는 전기 통신 역무에 관한 서류(양식 제4)
ⅳ) 신청자가 실시하는 전기 통신사업 이외의 사업의 개요
ⅴ) 신청자가 기존의 법인일 때는
• 정관 또는 등기부의 등본
• 임원 또는 사원의 명부 및 이력서
ⅵ) 신청자가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자일 때는
• 정관 또는 등기부의 등본
• 발기인, 사원 또는 설립자의 명부, 이력서 및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ⅶ) 신청자가 ⅰ) 이외의 단체일 때는
• 정관, 규약 등 해당 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 등을 입증하는 서류의 등본
• 임원의 명부, 이력서 및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ⅷ) 신청자가 개인일 때는
•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

총무 대신은 전기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를 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총무 대신은 이하의 사유로 등록을 거부했을 때 문서에 의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12조(등록의 거부)
ⅰ)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유선전기통신법 혹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해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ⅱ) 전기통신사업의 등록의 취소를 받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
ⅲ) 법인 또는 단체이며, 그 임원가운데 ⅰ) 또는 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ⅳ) 해당 전기통신사업의 개시가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항을 전기통신사업자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등록의 실시)
-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이름
- 업무 구역
-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 등록 연월일 및 등록 번호

사업자의 명, 업무구역, 전기통신설비 개요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명을 변경하거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총무대신은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제13조(변경 등록 등)
1. 제9조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는 총무대신의 변경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변경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총무성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총무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10조 제2항, 제11조 및 전조의 규정은 제1항의 변경 등록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1항 중 「다음의 사항」은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전조 제1항 중 「제10조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의 각 호」를 「변경 등록과 관련되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의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4. 제9조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또는 제1항 단서 조항의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했을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총무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총무대신은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등록의 표준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 정도이다.

라. 전기통신사업의 공익특권 인정 절차

전기통신사업자 중에서 공익 사업 특권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에의 진입에 관한 수속(등록 또는 신고)과는 별도로 그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총무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덧붙여 인정의 신청은 등록의 신청 또는 신고 시에 동시에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 또는 신고를 끝마친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제117조(사업의 인정)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해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절의 규정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신청에 의해 그 전기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총무 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2.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37)]

일본의 전파관리는 총무성 내 종합통신기반국의 전파부에서 통신용과 방송용 모두를 총괄하며 전체 주파수 할당, 무선국 허가, 전파감시, 전파 이용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파관련 법체계는 전파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이뤄져 있고, 아직까지 정부 주도의 주파수 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선국 면허 신청서를 심사함에 있어 '주파수 할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의 사업자 선정 과정이 된다. 미국, 영국, 호주가 경매제에 기반해 주파수 할당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비교심사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2009년 7월에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매제 도입을 검토 중임을 밝힌바 있어 향후 경매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파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총무대신이 공시하는 주파수의 사용 신청은 총무대신이 공시하는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규제의 제정 또는 개폐와 관련되는 의견 제출 수속」(1999년 3월 23일 각의 결정)에 근거하는 공청회를 거쳐 총무대신이 공시하는 심사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며 신청이 아래의 심사 기준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비면허를 부여한다.

ⅰ) 공사 설계가 전파법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가 ⅱ) 주파수의 할당이 가능한가 ⅲ)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개설의 근본적 기준에 합치한가

37) 일본 전파법 내에는 국내 전파법에서 의미하는 할당과 같은 제도가 없으며, 국내 전파법에서 사용하는 지정의 의미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을 할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한편, 신규사업자가 개설하는 전기통신사업용의 무선국이 전파 감리상 중요하고도 이례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파 감리 심의회에의 자문을 거쳐 예비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표준 처리기간은 무선국의 종별 등에 의해 상이하다. 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기지국은 한 달 반, 육상 이동국(land mobile station)은 한 달이 걸리며, 등록의 경우에는 약 15일이 소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면허를 부여 받을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면허 결격 사유의 예외이다.

ⅰ) 실험 무선국, 특정의 선박 무선국, 특정의 항공기 무선국, 아마추어 무선국 ⅱ) 대사관 등의 공용에 제공하는 고정 무선국(상호주의에 근거한다) ⅲ) 육상을 이동하는 무선국, 휴대해 사용하는 무선국 및 이러한 무선국 등으로 통신을 실시하는 육상에 개설되는 무선국 ⅳ) 전기 통신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개설하는 무선국

또한 전파법이나 방송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면허의 취소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이후 2년간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예비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공사 낙성 후에 무선설비 및 무선 종사자 등의 검사를 받아 검사에 합격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가 부여된다. 한편, 안테나 전력이 일정한 수치 이하의 휴대 전화 기지국 등의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등록증명기관이 실시하는 기술 기준 적합 증명의 취득 등을 조건으로 「예비 면허」 및 「낙성 후의 검사」를 생략하는 간이 수속에 의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기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및 전파 규칙(RR)에서 규정하는 수속을 밟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진입규제 완화로 주파수 할당절차 및 무선국 개설허가가 사실상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선정한다. 주파수 할당 절차는 ITU 등 국제기구의 주파수 분배 결정을 참고한 국내 주파수 분배, 기술조건에 대한 검토 및 무선국 면허 방침안의 발표, 사업자의 선정 순서로 진행된다.

영미권 구가들이 시장기구방식을 통한 할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전파관리에 경제적 메커니즘을 도입하는데 보수적인 편이다. 2000년 전파법 개정으로 사업 양도로 무선국 면허의 승계가 가능하게 되어 부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있다.

〔그림 3－1〕 일본의 주파수 할당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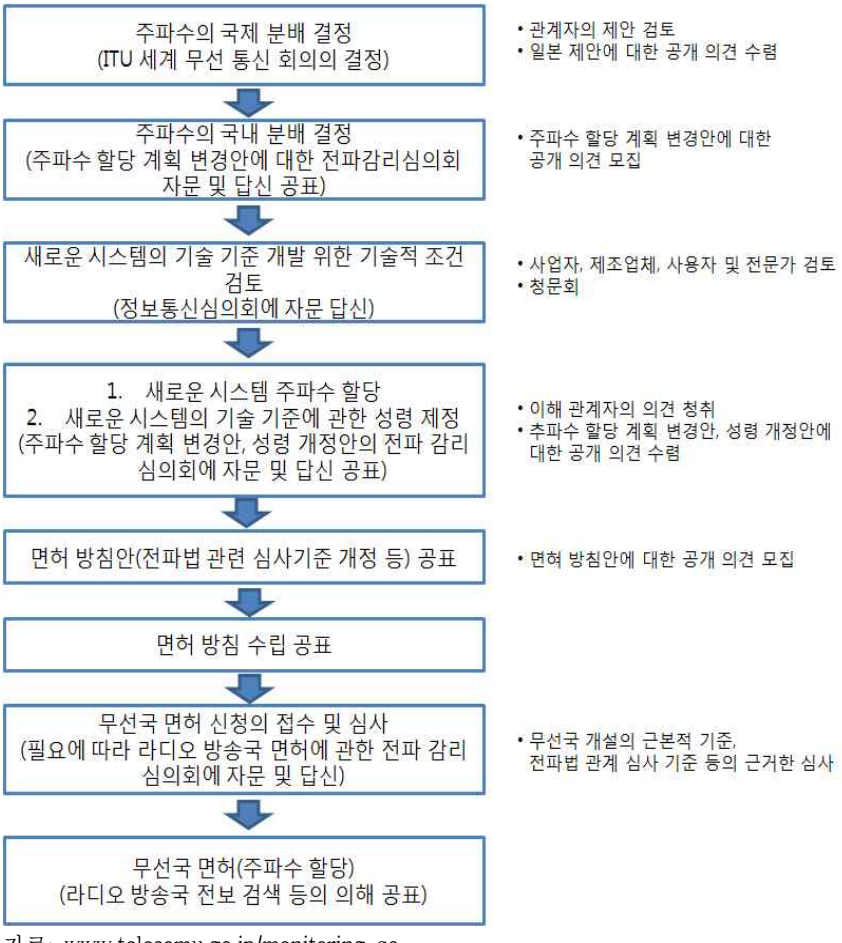

자료: www.telesomu.go.jp/monitoring_qa

제 4 절 호 주

1. 전기통신서비스의 분류

가. 서비스 분류

호주에서의 통신서비스는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전송서비스(Carriage service)와 콘텐츠서비스(Content service)로 구분된다. 전송서비스(Carriage service)는 유도되거나 그

렇지 않은 자기장 에너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며, 콘텐츠 서비스는 1) 방송서비스, 2) Dial-up 등 온라인 정보서비스, 3) VOD 등 온라인 오락 서비스, 4) 기타 온라인 서비스, 5) 정보통신부 장관 지정에 따른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송서비스가 통신망을 이용하여 단순히 트래픽을 전송하는 서비스라면, 콘텐츠서비스는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예: 방송서비스, 온라인정보서비스, 온라인오락서비스(VOD 등), 온라인교육서비스 등)라는 성격을 갖는다.

Section 7 "carriage service" means a service for carrying communications by means of guided and/or unguided electromagnetic energy. Section 15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content service is: (a) a broadcasting service; or (b) an on line information service(for example, a dial up information service); or (c) an on line entertainment service(for example, a video on demand service or an interactive computer game service); or (d) any other on-line service(for example, an education service provided by a State or Territory government); or (e) a service of a kind specified in a determination made by the Minister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TELECOMMUNICATIONS ACT 1997

나. 사업자 분류

통신사업자는 설비보유여부에 따라 전송서비스 사업자(Carrier)와 서비스제공 사업자(SP; Service Provider)로 구분된다. 전송서비스 사업자는 공공 대중을 상대로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SP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다시 CSP(Carriage Service Provider)와 Contents Service Provider로 구분된다. CSP는 전송서비스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망설비(Network Unit)를 이용하여 전화접속 서비스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전송서비스 사업자도 겸업이 가능하다.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는 공중에 콘텐츠 서비스(방송, 온라인, 장관이 규정한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2. 사업허가제도

가. 개요

전송서비스 사업자는 망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로 ACMA로부터 개별적으로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설비 운영에 따른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CSP는 허가 취득이 필요하지 않으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997년 통신법 Schedule 2).

〈표 3－6〉 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사업자		진입규제	제공 서비스
전송서비스 사업자(Carrier)		면허 취득 필요	• 전송서비스(Carriage Service) 제공에 필요한 Network Unit 보유 • 전송서비스 직접 제공 가능
Service Provider	Carriage Service Provider	없음	Carriage Service
	Content Service Provider	없음	Content Service

나. 전송서비스 사업자의 진입절차

전송서비스 사업자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허가신청서와 허가비용을 선납하여 개별적으로 허가를 신청(Individually Licensed)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에 제공되는 정보는 신청자의 사명, 주소, 대표자 및 실무연락책 등 신청자에 대한 일반정보, 허가비용 지불방법, 신청자의 법률상 정체 및 회사 구조, 보유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단위 및 형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형태, 전송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 방안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망/기술에 대한 정보, 망 구조도, 주파수 할당 결과도 제출하여야 한다(통신법 21조).

신청을 받은 ACMA는 전송서비스 사업자로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① 준법적인 법인격인지의 여부, ② 면허료 부담 여부의 두 가지 조건을 평가하여 20일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허가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송서비스 사업자는 준법적인 법인 혹은 개인으로, 적격의 합명회사 또는 공공기관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허가

비용(1회 $2,500)을 부담하여야 한다.

Part 3. Carriers 41 Simplified outline The owner of a network unit that is used to supply carriage services to the public must hold a carrier licence unless: (a) a nominated carrier declaration is in force in relation to the network unit; or (b) an exemption applies. • Carrier licences are granted by the ACMA. • The holder of a carrier licence is known as a carrier. • If responsibility for a network unit is transferred from the owner of the unit to a carrier, the ACMA may make a nominated carrier declaration that declares the carrier to be the nominated carrier in relation to the unit. • Carrier licences are subject to conditions.

보유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단위는 ① 단일회선(500m이상), ② 다중회선(5Km이상), ③ 무선망, ④ 기타 특정네트워크로 구분된다. 단일회선(Category 1)은 500m이상 떨어진 서로 다른 두 지점간을 연결하고 있는 단일회선을 의미하며, 다중회선(Category 2)는 500m에서 5Km이상의 하나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두개 이상의 회선의 연결을 의미한다. 무선망(Category 3)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지점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무선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선망으로 분류한다.

기타 특정네트워크(Category 4)는 통신법 제 29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특정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a. 공공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b. 지역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지국 c. 양방향 상호접속되어 있는(Double-ended Interconnected) 고정 무선통신 망 d. 위성통신 시설 e. 무선 송출 또는 수신 장비

3. 주파수 할당

무선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파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에 의해 사업자면허

와 더불어 무선통신면허(Radiocommunications license)가 필요한데, 무선통신면허는 다시 주파수면허(Spectrum license), 설비면허(Apparatus license), 종별면허(Class license)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송 면허를 받아야 하고 주파수 면허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는 통신 산업 발전 계획에 대한 장관의 승인과 타 사업자에 대해 설비 접속 허용 및 네트워크 정보 제공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큰 제약이 없어서 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진입규제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주파수면허는 특정 기술,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사전 제한조건을 두지 않고, 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거래를 포함한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한다. 설비면허는 특정 기기의 운용을 전제한 면허로, 19개로 분류된 기기형식에 따라 구분되고 허가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종별면허는 허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특정한 무선설비에 대해 개방적, 집단적으로 사용면허를 발부하는 것으로 ACMA가 정한 일반적인 수준의 허가요건만을 준수하면 된다.

주파수면허는 제도 자체가 전파에 대한 경제적 가치산정, 분할, 양도, 거래를 통하여 전파사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무선통신법 60조 1항에 의거하여 ① 경매(auction), ② 밀봉입찰(tender), ③ 사전가격(pre-determined price)에 의한 할당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신규할당의 경우 경매(또는 tender)방식을 우선적으로 하되 경매에 실패할 경우 또는 기할당 주파수의 경우 사전가격에 의한 할당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가격에 의한 할당에 2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경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한다.

재할당시 기존 사업자 우대 및 재경매 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나 재경매를 유력한 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호주의 RC Act는 주파수 면허의 재할당은 시장기반 방식(market based method: 81조) 및 공익성심사를 통한 기존 사업자에의 재할당(82조)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RC Act는 공익성(Public Interest)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공익성 심사를 통한 재할당 사례도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제 4 장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및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방향

제 1 절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방향

1. 기본방향

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의 변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기간과 부가통신역무로 구분하고 있으며, 다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구축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사업자)을 기간과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있다.

기간통신역무라는 용어는 유선통신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1991년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으로 공중전기통신역무를 대신하면서 등장했다. 이후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을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유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보유)과 부가통신사업(미보유)으로 구분하고 각각 허가(지정)와 등록을 통해 진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시 기술적·지역적 제한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자(유선)와 특정통신사업자(무선)로 구분하였다.

과거의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역무를 정의함에 있어 서비스의 성격에 근거한 포괄적인 정의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중요도[38]에 따라 이를 열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었으며, 이 경우 특정서비스가 상용화 초기단계에서는 부가통신역무로 분류되었다가, 가입자 및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기간통신역무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접속역무와 인터넷전화역무가 각각 2004년 7월과 10월 기간통신역무로 전환되었다.

---

38) (구)전기통신사업법의 정의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의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전신·전화역무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IP 네트워크의 급속한 보급 및 기술진보에 따른 융·결합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통신시장은 수평규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접하게 된다. EU의 방송통신 규제프레임워크 수립에 따라 등장하게 되는 수평규제의 개념은 기술진화 및 서비스 융합에 따른 경쟁촉진 및 신규서비스 활성화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과거 각 서비스가 독립적인 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었음에 따라 수직적 규제체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All-IP 및 융합에 따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짐에 '동일계층, 동일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IPTV 법제화 및 상용화에 2~3년의 시간 소요되는 등 융합에 따라 기존의 체계로는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경계영역의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반면, 수직적 규제체계하에서는 경계영역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틀이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서비스 도입이 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 역무통합이라는 이름아래 기존 전화, 가입전신 등 세부적인 허가단위로 구분되던 기간통신역무를 하나의 허가단위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과거 A라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B라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무추가에 따른 변경허가가 필요했으나, 기간통신 역무통합에 따라 변경허가라는 절차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기간통신 역무통합에 따른 진입규제의 완화하는 별개로 주파수 획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전파법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 절차를 정립하게 되었다.

나. 기본방향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변천을 살펴볼 때, 기간통신 역무통합 및 주파수 할당 제도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주파수 할당을 통한 사업자 선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주파수 할당에 있어서의 경매제 도입은 사업자 선발시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닌 가격경쟁을 통한 자원배분 방식을 취할 것을 의미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사업허가의 기능 축소가 불가피하며 무선통신사업의 경우 주파수 할당을 통한 진입규제 제도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행 경매제가 지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심사 미비라는 문제점이 부각되는 경우 단기적으로 허가제도를 경매입찰자의 자격요건 심사 수준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제도 개선 방향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선 방향

1)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허가의제 제도의 도입[39]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무선통신서비스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로 기간통신역무에 해당하며, 기지국 등 자기의 설비 구축을 통해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은 주파수 할당 등과의 관련성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지 않아,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할당 여부와는 독립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획득해야만 비로소 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주파수 자원의 획득은 무선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필요조건에 해당하며, 주파수 할당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심사를 통한 주파수 할당의 경우 그 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수준의 기술적 및 재정적 능력에 대한 심사가 수행되고 있음에 따라 이 경우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허가심사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불필요한 규제로 비춰질

39) 건축법의 경우 건축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건축허가의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5항 "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경우 주파수 할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부여하는 허가의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의 경우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격경쟁방식으로 주파수 자원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 제도하에서는 주파수 할당 자격요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미리 받을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 진입에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을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식 보다는 주파수 할당의 사전절차로써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자격요건 심사를 적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나. 전파법 개선 방향

현행 경매제의 입법시 사업자의 능력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가 배제되었음에 따라, 일정한 검증절차(심사)를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보완 필요하다.[40] 현행 전파법 제10조제1항은 주파수 할당 공고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41] 동 규정은 예를 들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획득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규정으로 경매제 적용시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신청 자격 기준을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선방향과 발맞춰 별도의 자격심사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할당 사전 참여제한은 전파자원의 희소성과 전파자원에 대한 독점 방지, 전파독점에 따른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적격한 할당대상자 선별이라

40) 경매라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전심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담합의 가능성 차단 등 경매제도의 단점 보완을 위해서는 객관성이 확보되는 일정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

41) 제10조(주파수할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는 목적을 가지는데, 이는 주파수 할당이 그 자체로써 진입정책의 성격을 가지며 주파수 할당을 통해 시장구도를 사전적으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여 주파수 대가금액만을 낙찰요건으로 한 국가에서도 재정능력, 신청자간의 소유지분관계 등 '경매참여 사전 자격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제 2 절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의 검토

1.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이하 '허가고시'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및 변경허가에 필요한 허가신청요령, 허가의 시기 및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허가고시에 의하면 사업법 제5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42] 허가신청법인은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로 구성된 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신청에 적합한지 여부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허가신청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3]

사업계획서 심사는 허가신청적격으로 결정된 허가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심사한다. 첫 번째 항목은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을, 두 번째 항목은 재정적인 능력을, 세 번째 항목은 제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을 심사한다. 각각의 심사 비중은 50점, 25점, 25점이다. 또한 각 심사항목 별로 세부적인 심사항목이 존재하여 각 세부 심사 항목별로 평가를 하게 된다. 각 세부항목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총점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다만, 허가신청법인간 경합이 있는 역무의 경우 총점의 고득점순으로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한다.

---

42) 허가고시 제3조

43) 허가고시 제9조

〈표 4－1〉 현행 허가심사기준의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배점 등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50점)	1.1 시장분석의 합리성과 서비스 제공계획의 우수성 1.2 망고도화 및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1.3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등과의 협력계획 1.4 소요설비추정 및 설비투자계획의 적정성 1.5 이용자보호 계획 1.6 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 1.7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1.8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등 투자계획의 효율성 1.8.1 기존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1.8.2 기지국 공용화, 공동망구축(로밍) 계획의 우수성	비계량(8점) 비계량(7점) 비계량(4점) 비계량(6점) 비계량(5점) 비계량(4점) 비계량(6점) 비계량(5점) 비계량(5점)
2. 재정적 능력(25점)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2 재무구조 2.2.1 수익성: 총자산 경상이익율 2.2.2 안정성: 부채비율 2.2.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2.2.4 신용등급 2.3 자금조달계획과 심사사항 1, 심사사항 3의 일관성 및 부합성	비계량(7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계량(3점) 비계량(6점)
3.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3.1 해당역무 제공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 3.2 해당역무 제공관련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술적 기여도 3.3 시스템구성 및 서비스 품질목표의 우수성 3.4 타 통신망과 상호접속, 운용보전계획, 장애시 대비계획 3.5 전문기술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의 우수성	비계량(6점) 비계량(5점) 비계량(8점) 비계량(3점) 비계량(3점)
100점	－	100점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일시출연금에 의한 가점) (2점)	○ 신청법인이 제시한 일시출연금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하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붙임 1〕 방법에 따라 최고 2점(상한액)의 가점을 부여하고, 신청법인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업자 수와 같거나 적을 때에는 상·하한액의 평균액 이상을 제시토록 하고 점수를 부여 － 단, 하한액 또는 평균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2점

평가방법은 크게 비계량평가와 계량평가로 나누어진다. 비계량평가는 정보통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하며, 평가항목별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중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계획과 심사사항의 일관성, 재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은 모두 비계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편, 재정적 능력 중 재무구조는 계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재무구조는 ① 수익성(총자산경상이익율), ② 안정성(부채비율), ③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④ 신용등급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총자산경상익률을 평균자산 대비 이익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수익성을 평가하고,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한다. 한편,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성장성을 평가한다. 신용등급은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수익성과 안정성, 성장성 평가 지표는 산업 평균 대비 해당 기업이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 경영분석에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지표값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작은 업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법인의 점수를 계산한다.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는 평가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 간 지표값이 산업평균보다 표준편차의 3배 이상 크면 최고점을, 3배 이상 작으면 최저점을 부여하고, 그 사이에 있을 경우 별도의 식에 의해 해당 기업의 취득 점수를 계산한다. 한편 안정성 지표는 해당기업의 지표값이 산업평균보다 표준편차의 3배 이상 크면 최저점은, 3배 이상 작으면 최고점을 부여한다. 신용등급의 경우 AAA에서 D까지 등급을 구분한 후 각 단계별로 0.7 또는 0.8점 정도의 격차를 두고 점수를 부여하였다.

재무구조를 평가하는 네 가지 지표의 배점은 각각 3점이다. 따라서 허가심사에서 계량적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만점에 총 12점이다. 계량평가의 경우 60점을 최저점으로 산정하며, 관련 재무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신용등급이 없는 기업은 최저점을 부여하고 있다.

〈표 4－2〉 계량지표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현행)

계량지표	평가요소	배점	평가 방법	평가 산식
총자산 경상이익률	수익성	3점	경상이익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2〕 × 100	• A ≤ X－3σ: 최저점 • A ≥ X＋3σ: 최고점 • X－3σ ≤ A ≤ X＋3σ : Y=80＋40*(A－X) / 6σ
부채비율	안정성	3점	총부채 / 자기자본	• A ≥ X＋3σ: 최저점 • A ≤ X－3σ: 최고점 • X－3σ ≤ A ≤ X＋3σ : Y=80＋40*(A－X) / 6σ
매출액 증가율	성장성	3점	〔(당기매출－전기매출) / 전기매출〕 × 100	총자산경상이익률과 동일
신용등급	종합 평가	3점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신용등급별 배점 참고 (신용등급이 없는 주주의 경우 신용등급 D부여)

주: A(임의 회사의 지표), X(산업평균), σ(산업 표준편차), Y(해당기업의 취득점수)

〈표 4－3〉 신용등급별 배점(현행)

신용등급	점수	신용등급	점수
AAA	3.00	BBB-	2.37
AA+	2.93	BB+	2.30
AA	2.86	BB	2.23
AA-	2.79	BB-	2.16
A+	2.72	B	2.09
A	2.65	CCC	2.02
A-	2.58	CC	1.95
BBB+	2.51	C	1.88
BBB	2.44	D	1.80

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는 대주주 지분율의 1.5배와 주요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그 합산된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계산된 가중치를 이용한다. 여기서 대주주란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하며, 주요주주는 의

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5% 이상인 주주를 말한다.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연도부터 50:30:20을 적용하여 3개년도의 자료를 모두 반영한다.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를 계산할 때에는 우선 해당 법인의 지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를 환산하고, 환산 점수에 대해 연도별 가중치를 다시 적용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한편, 신용등급 평가의 경우는 해당법인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며 점수를 산출하며, 연도별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 개선방안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은 통신 시장에 진입하면 일정 수준의 수익성은 보장된다는 인식 때문에 허가심사기준 가운데 재정적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장비조달을 위한 국내외 장비제조업체 등과의 협력 계획 등 경제적 파급효과 관련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통신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사기준을 변화된 통신시장에 계속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계량평가 지표의 모색과 계량평가 점수 비중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가. 새로운 계량평가 지표의 검토

1) 설비투자규모 반영을 위한 신규지표의 모색

현행 허가고시에서는 설비투자규모를 반영할 수 있는 계량지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신규 지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 번째 지표는 '자기자본 대 (신규) 설비투자재원소요액' 지표이다. 이 지표는 허가신청 법인이 사업계획서 상에 신규로 설비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금액 중에서 자기 자본으로 충당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기준'을 보면 종합편성채널은 최초 납입자본금 5,0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점을,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최초 납입자본금이 600억 원 이상일 경우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심사에서는 제공하는 역무의 범위가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고시 형식으로 구체적인 납입자본금 금액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설비투자재원소요액 중 자기자본의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해당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를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44]

두 번째 지표는 설비투자금액을 포함한 총 투자금액 중에서 자기자본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자금출자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지표는 기존법인보다는 자금출자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설립예정법인에게 더 의미 있는 지표이다.

세 번째 지표는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표 상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투자예정액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지표는 허가신청법인이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금액 중에서 내부 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평가하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주식을 발생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자기자본조달),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타인자본조달), 내부잉여금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내부조달)이 있다. 이 중에서 세 번째 신규지표는 내부 활동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과거 5년 간(혹은 3년 간)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대 투자금액을 측정하여 투자금액 대비 내부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용평가등급의 현실화

신용평가등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신용평가가 등급 간 점수 차가 너무 적어 신용등급이 함의하고 있는 실제적인 기업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BB 이하이면 '정크본드(junk bond)'[45]로 분류되는데, 허가고시에서는 신용등급이 BB

44) 예를 들어 전국에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 정도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허가신청법인도 당연히 설비투자재원소요액을 100억 원 내외로 적어서 제출할 것이다. 따라서 설비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100억 원 중에서 자기자본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허가신청대상 법인의 규모를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100억 원이 필요한 사업에 자기자본이 5억 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45) 정크본드란 일반적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로 '고수익채권' 또는 '열등채'라고도 부른다.

이하인 경우에도 2.23점(만점 대비 74%)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BB 이하의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최저점을 부여함으로써 신용평가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평가 등급 간 점수 차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허가심사기준의 개선과 관련된 여섯 가지 계량지표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을 요약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계량지표의 평가 요소 및 평가 방법(예시)

계량지표	평가요소	평가방법
총자산세전수익률	수익성	세전이익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2] × 100
부채비율	안정성	총부채 / 자기자본[1]
신용등급	안정성	신청법인, 대주주, 주요주주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공인신용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
신규지표①: 자기자본 대 (신규)설비투자재원 소요액	설비투자금액 중 자기자본으로 충당 가능한 부분	자기자본 / (신규)설비투자재원 소요액[2]
신규지표②: 자기자본 대 투자(출자) 금액	자금출자능력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	자기자본 / 투자(출자) 금액[3]
신규지표③: 영업활동현금흐름 대 투자(출자) 예정액	출자자의 재무능력 (내부활동을 통한 자금 조달 능력)	각 출자자별 과거 5년간 연평균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투자(출자) 금액

주: 1) 자기자본=총자산－총부채
2) (신규)설비투자재원 소요액: 사업계획서 상에서 밝힌 설비투자예정금액
3) 투자(출자) 금액

구 분		투자(출자) 금액
기존법인		내부잉여현금을 통한 총 투자예정금액
주요주주	설립예정법인	출자예정금액(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기존법인	증자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나. 심사항목별 평가 비중의 검토

현행 허가고시에서 계량평가 지표의 비중은 12%이다. 그러나 계량지표의 비중이 너무 작아 실질적인 영향력은 더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계량평가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방송 산업에서도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편성채널에서의 계량평가 비중을 24%, 보도전문채널에서의 계량지표의 비중을 20%로 높인바 있다.

한편, 현행 계량평가는 심사항목별로 최소점 60점을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모든 기업이 계량평가 점수 12점 중 최소 7.2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 계량평가가 허가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축소시키기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심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계량평가 최저점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재정적 능력의 평가를 위한 정성/정량 기준의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자금조달계획과 설비투자계획 등 다른 사업계획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한 비계량평가와 총자산 경상이익율 등 지표를 사용한 계량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위에서 논의된 새로운 지표의 도입 및 심사항목별 평가 비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정성평가의 일부를 계량평가로 돌리거나, 허가신청법인의 재무구조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가 가능한 측면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에서 논의된 현행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 제도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신규사업자 간의 비대칭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기간통신 역무통합에 따라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규모 등에 상관없이 주파수 할당만으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반해, 신규사업자는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하며, 이 경우 법제정 의도와 크게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극단적인 예로, 자본금 1,000억 원의 신규사업자 A와 자본금 10억 원의 기존사업자 B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 이에 대해 경매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A는 허가심사를 통해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B는 무선통신서비스의 제공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다.

둘째, 단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추진하는 경우 현 제도는 사업허가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심사의 중복적인 적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실무에 있어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제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업허가와 주파수 할당의 심사기준의 차이에 따라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업허가를 통과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심사에는 떨어지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인 조율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심사를 통한 사업허가와 원칙적으로 가격경쟁방식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갖는 자원배분 방법의 차이에 근거한 것이다. 복수의 신규사업자가 진입을 추진하는 경우 이들 중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허가와 경매라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되게 될 것이나, 이들에 대해 허가심사를 먼저 적용하게 되는 경우 재정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허가심사에 탈락, 경매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시장 기능에 의거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에 반하는 결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상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현재의 이원화된 진입규제를 주파수 할당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선통신사업자의 진입에 있어서 핵심적인 필요조건은 주파수 자원의 획득에 있으며, 주파수 할당 그 자체가 허가권의 부여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에 따라, 이는 원칙적으로 심사를 통한 것이든 경매를 통한 것이든 주파수 자원의 관리 측면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주파수 할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미국과 같이 별도의 사업허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주파수 자원의 획득 그 자체가 사업허가로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우리나라 통신법 체계의 진화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무선통신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주파수 할당으로 돌리는 대안은 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등록으로 전환하는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측면도 존재한다. 유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미 충분히 많은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대한 진입규제의 필요성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허가제도는 실질적으로 무선통신서비스에 적용될 때 그 유의미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 기능을 주파수 할당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 폐지라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진입규제 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전파법에 따른 경매제의 운용에 있어 사전심사 제도의 미비에 따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허가제도가 그 기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1〉은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해 향후 요청되는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제도 개선방향을 요약한 것이다.

〈표 5－1〉 사업자 분류 및 진입규제

구분	사업허가	주파수 할당
현행	• 신규사업자에 대한 허가	• 기존/신규사업자에 대한 할당
	• 허가와 할당이 모두 필요한 경우, 할당공고시 그 자격을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하는 형식으로 사업허가를 먼저 적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허가심사를 통해 단수의 사업자가 선발되는 것도 가능	
제도 개선 방향	• 허가의제 제도의 도입 － 예를 들어,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은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 경매제 적용시 사전심사 기능 도입 － 가격경쟁방식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심사할 필요는 존재
	• 장기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등록제 수준으로 전환	

참 고 문 헌

나성현 외(2010),『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비한 허가 및 양수합병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연구 10-1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11.

방송통신위원회(20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 세부심사기준.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 불허", (2010. 11. 2)

_____, "(주)한국모바일인터넷(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미선정", (2011. 2. 24)

_____,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 (2011. 11. 18)

_____,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 미선정", (2011. 12. 16)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2011),『방송통신산업 통계월보』, 2011. 7.

서울경제, "제4이동 후보 'KMI' 방통위 사업 적격심사 통과", (2011. 11. 01)

여재현 외(2009),『주파수 할당대가 제도개선 및 실행방안 연구』, 정책연구 09-7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2.

이승훈·송송이(2011),『해외 주요국 주파수 정책 현황 및 시사점』, Digieco Focus, KT 경제경영연구소, 2011. 03. 03.

이종화 외(2011),『우리나라와 외국의 이동통신시장 비교』, 현안연구 11-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법영사.

_____(2010),『200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12.

_____(2011),『2010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12.

정부연(2010),『무선통신서비스』, 방송통신산업동향, 2010. 12.

최계영·이승훈(2005),『해외 주요국 전파관리제도』, KISDI 이슈리포트 05-21, 정보통신정

책연구원, 2005. 11. 21.
최계영 외(2010), 『전파법상 주파수 할당제도』, 정책연구 10-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2.
CNB 뉴스(2011. 8. 16), "트래픽 폭증에 통신사·인터넷 업체 간 '망 부하' 문제 놓고 논란".
Gartner(2011), Market Share: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by Region and Country (2011)
모바일컨텐츠이야기 홈페이지(http://www.mobizen.pe.kr/)
http://www.fcc.gov
http://www.ofcom.org.uk
http://www.jftc.go.jp
http://www.acma.gov.au

● 저 자 소 개 ●

임 준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Michigan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 성 현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경제학과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 유 리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 아 름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13

무선통신사업 진입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A Research on the Wireless Telecommunications Market Entry Regulation)

2011년 12월 일 인쇄

2011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인 성 문 화